국뚱기 90-12-123

열람용
정보자료센터

統一家族論文集 第3輯

民族統一의 摸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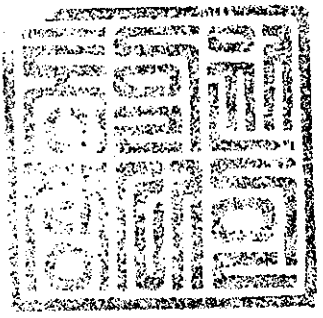

南北韓의 葛藤解消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 朴甲壽

北韓의 女性政策에 관한 硏究 尹美良

統 一 院

이 論文集은 '90年度 職員個別研究課題發表會에서 發表된 優秀論文을 收錄한 것임.

1990. 12.

企 劃 管 理 官 室

目　次

統一家族論文集 第 3 輯

1. 南北韓의 葛藤解消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 ……朴甲壽… 3

2. 北韓의 女性政策에 관한 硏究 ……尹美良… 42

南北韓의 葛藤解消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

朴 甲 壽*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Ⅱ. 理論的 背景 및 硏究方法
Ⅲ. 南北韓의 葛藤原因
Ⅳ. 南北韓의 葛藤類型과 體制行動
Ⅴ. 行動科學的 接近을 통한 南北韓의 葛藤解消方案
Ⅵ. 限界點 및 展望
參 考 文 獻

Ⅰ. 問題의 提起

分斷 半世紀를 헤아리는 동안 南北韓은 통일문제를 民族 至上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여 왔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 南北韓이 취한 接近方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정도에 비해 결실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인 방법이었다고 自負하기가 어려웠다.

* 調査硏究室 · 4級相當, 韓國心理學會, 韓國精神治療學會 會員

서로간의 이데올로기 차이와 뿌리 깊은 불신감이 남아 있어 對話 障碍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갭을 확대하면서 葛藤의 惡循環까지 빚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 南北韓의 統一政策은 비타협적 요소가 많은 만큼 아직 분단 현실과 국가 목표를 연계시키는 정책구상에 머물러 있어 보다 차원높게 民族發展 철학이 담겨 있는 國家理念으로 정립시켜 나가기도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강국들의 영향력이 크고 北韓이 적화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이나 平和定着과 發展的 對話의 기틀을 확보해 내지 못한다면 마땅히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재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특히 韓半島는 지구상에서 가장 휴전기간이 오랠 뿐 아니라 對峙線上에 있는 무장력도 가장 밀집되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데다 이제는 지구상에 유일한 分斷國으로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에 分斷解消의 돌파구를 마련해 내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韓民族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지적당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직면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南北關係 改善의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대하기 어려운 북한의 態度를 變化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 한가지의 이론이나 모형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곤란하고 설혹 유사한 해결책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제한된 假說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充分條件에 해당하는 대안이라고 자신하거나 만족할 수도 없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높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接近方法을 모색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政策學에 있어서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 이론과 社會心理學의 갈등(conflict) 및 태도변화(attitude change) 이론, 정신의학에 있어서의 行動修正(behaviour modification) 및 心理矯正(psychotherapy) 기법을 조합하여 일련의 行動科學 체계를 구상함으로써 南

北韓의 葛藤解消를 유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이념·제도와 법규보다는 感情과 認識構造 調整問題가 훨씬 더 시급하며 이를 위한 심리교정과 행동수정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기할 것이다.

1) 行動科學은 독립된 학문이라기 보다는 人間行態(행동, 정신활동, 태도, 감정, 인식, 가치관 등)에 관한 모든 과학을 종합한 것으로 인간행태에 대해 영향을 끼쳤거나 인간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 하는 학문이다.
金元卿, 「행동과학」(서울 : 박영사, 1976), p. 9.
서울대 의과대학, 「행동과학」(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89), pp. 3—5.

Ⅱ. 理論的 背景 및 硏究方法

지금까지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論理展開와 對策 構想의 기저를 이룬 이론들은 대부분 체제의 利害得失에 민감한 政治戰略과 국내외적 지지확보를 위한 弘報對策과 관련된 분야의 이론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상대측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이나 피해를 極小化하는 데는 有用하지만 상대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는 기여할 여지가 적었었다. 지금과 같이 변화된 정세에서는 승리나 제압을 목표로 하는 "鬪爭的 戰略·戰術"과 화해, 일치를 강조하는 "理解와 葛藤解消"가운데 후자의 방법이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에 體制와 制度를 둘러싼 效率性과 生産性 경쟁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이제 남은 것은 人的인 경쟁—즉 신념과 인식, 민족성, 도덕성, 윤리등으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상태가 南北韓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차후 심리적인 면에서의 건전상태 여부와 강약 여부는 통일 후 新進世代의 계층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2]

여기에서는 통일문제를 보다 現實的으로 접근해 가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의 잠재적 토대가 되고 있는 國家, 集團 및 統治者의 心象形成이라고 가정하였다. 상대에 대한 心象(image)은 감정과 인식구조에 의해 거의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南北韓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心理理論에 뛰어났던 Laswell은 政策過程에서 意思決定의 7단계 모형(seven point model of the decision process)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정책

2) 2차대전후 정신의학자였던 실존 철학자 K. Jaspers는 敗戰 獨逸人의 황폐한 심리상태를 우려하여 2년 동안 아나운서로 근무하며 독일인의 정신구조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담당기구와 그들의 기능에 대한 조사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그 모형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1단계는 情報(intelligence)단계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기관, 언론, 통계기관, 私的인 조직까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수집, 제공, 처리한다.

제2단계는 動員(promotion)단계로, 이익집단이나 정부, 黨僚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안의 지지획득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3단계는 處方(prescription)단계로 정책결정자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 진다.

제4단계는 行動化(invocation)단계로 결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 경찰 등 하급 집행부서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단계는 適用(application)단계로 개별적인 行政行爲를 의미하고,

제6단계는 終結(termination)단계로 내용 실현으로 행동화와 적용의 종결,

제7단계는 評價(appraisal)단계로 정책내용의 실현 정도, 결과 및 責任을 평가 확인한다.

이상의 7단계 모형에서 제 4행동화, 제 5적용단계는 進行段階로 합칠 수도 있고, 제6단계(종결)은 현실상 政策終結이 혼하지 않음으로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Lasswell의 이 7단계 모형은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最初 情報의 중요성과 각 단계에 미치는 정보의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정보가 政策決定者의 心象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된 정보는 왜곡된 심상을 형성케 하며 각 단계별 정책 참여자는 實像이 아닌 虛像에 따라 판단하고 정책 대안을 구상하게 된다.

이 모형을 빌리자면 南北關係에서는 하나의 cycle로 환류(feedback)되는 7단계 과정에서 2, 5, 6단계에 비해 1, 3, 4, 7단계에서 더욱 심리적인 變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과정에서의 情報의 作用은 國家行動(national behaviour)과 心象(image)에 대해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事實과 올바른 視角」에 의하지 않는 情報處理는 오직 정보담당자의 가치관과 認知體系(cognitive system), 情報對象에 대한 심상에 따라 굴절되거나 誤識된다.

韓國이 北韓을 괴뢰집단이 이끌어 가는 未收復地區로 인식하고 북한이 남한을 사회주의권으로 통합시켜야 할 美帝의 植民地로 인식해 옴에 따라 양측은 상대의 변화된 실체를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固定觀念(stereotype)과 최초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까지 받은 교육적 가치판단 과정을 거쳐 해석하고 있다.

心理學에서는 심상을 「外的 刺戟 또는 記憶에 의해 의식의 표면에 나타난 직관적 表象」, 「感覺的 性質을 지닌 채 머리에 떠오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국가도 하나의 有機體로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순환 작용으로 생존한다고 볼 때 國家行動(national behaviour)은 국가의 상대에 대한 심상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에의 심상은 「한 국가가 국가외의 다른 國家·集團으로부터 받는 자극에 대한 반응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行動을 선택할 때는 투입된 이미지 요소(心象情報)를 기초로 해서 국가목표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行動化(output)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살피게 되면 차후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測定對象이 갖고 있는 심상은 정책결정에 시종여일하게 영향을 주어 對應方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외교적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政策決定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명분, Ideologie, 지도자의 개성, 지배집단등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心理的 價値判

3) 민중서관 편집국, 「심리학 소사전」 (서울 : 현음사, 1988). p. 136.

斷 土臺로서 상대에 대한 심상의 작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그런데 여기에서 심상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葛藤 문제가 등장한다. 갈등은 개인 또는 국가의 行動方針을 확정짓는데 있어 혼선을 빚게 하고 시기적절한 대책수립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국가는 政治理念에 따라 인적·물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존재하고 정치이념은 信念體系로서 제시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립된다. 그러나 南北韓간에는 現實認識과 목표상의 차이,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갈등처리의 未熟으로 신념체계는 妄想體系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점도 있다. 따라서 갈등 현상에 대한 全般的 認識을 전환시키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5]

인식과 갈등문제 다음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變因은 感情에 관한 문제이다. 축적된 감정이 태도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感情을 解決하거나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說得論理만으로 대상에 대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변화에 대한 기대는 서로간에 葛藤을 克服하려는 의지와 극복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나 접촉, 교류가 빈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이 태도변화 발생 방법에만 의존하기 어렵다.[6]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行動修正과 心理矯正 기법이다.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서로간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여러가지 접근 idea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北韓의 거부 반응을 줄이면서 共感帶를 擴散시키는 방향으로 行動科學에 사용되는 modeling, shaping, reinforcement 등 여러

---

4) 鄭正佶, 「정책결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88), pp. 190－192.

5)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13－28.

6) Rosenberg, M. J. and Hovland, c. I,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Aaven: Yale univ, press, 1960, pp. 1－14.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南北韓 간에 응용할 수 있는 갈등해소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7]

7) 선진국에서는 매우 어려운 외교문제, 분쟁, 협상등을 위해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은 정신과 의사를 보내어 베긴 수상측과 사다트 대통령측 수뇌들의 편견을 없애고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성공시켰다. 歐美學界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人間問題에 중심을 둔 정치학과 정신의학을 결합한 정신정치학(Psycho Politic)이 대두되고 있다.

白尙昌 博士(韓國社會病理研究所長)가 시도한 金日成 精神分析도 이에 속한다.

Ⅲ. 南北韓의 葛藤原因

1. 非現實的 認識과 行動

人間行動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의 기본적 사고의 특징은 인간을 정보에너지시스템으로 보는데 있다. 자기보존의 경향, 즉 自己解體에 대한 저항 경향을 갖고 있고, 유전이나 전래되어온 잠재능력에 따라 성장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다른 生物體와 같으나 인간시스템은 情報를 受容하여 처리하는 의식구조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생물체보다도 우수하다.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서 다음 네가지의 특징이 있다.[8]

첫째로, 인간은 自己 認識과 自己 指揮가 가능하다.

豫見과 목적을 갖고 행동하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로, 인간은 自己行動을 修正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본능의 지배를 가장 적게 받는다. 정보를 기억하고, 새로운 기능, 관념, 道具등을 개발할 뿐 아니라 추리력이나 상상력을 동원하고, 항상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세째로, 인간은 자극이 없어도 Symbol을 사용해서 반응할 수 있다.

思考作用을 통해서 심볼을 조작하고 장래의 행동을 理知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네째, 인간은 환경과의 교섭을 통해 文化를 발전시킨다.

社會를 형성하는 동물은 있으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환경과의 교섭에 임해서 인간은 감정, 욕구 등을 동반한다.

다섯째, 인간은 情報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

8) 金元卿, 「행동과학」(서울 : 박영사, 1976), pp. 16—23.

인간행동은 다른 동물들처럼 오직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에 앞서 價値 判斷에 따라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결정하고 수단을 선택한다.

이상 다섯가지 인간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은 에너지 시스템인 동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 南北韓의 葛藤을 이상의 인간시스템에 입각해서 살펴볼 때 하나의 정보가 잘못된 知覺過程을 거치거나 목표지향적으로 해석 처리되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行動으로 出力됨을 알 수 있다. 앞서 Laswell의 意思決定 7단계 모형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정보단계에서 수집된 최초정보는 마지막 단계까지 시종여일하게 決心過程에 영향을 주고 있다.

知覺過程에서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에 대해 관심과 욕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 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불충분한 정보나 애매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상상에 의해 情報를 構造化하고 擴大 處理코자 한다.

또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을 처리할 자신이 있다고 믿어지면 課題指向的으로 옮겨가고 위협을 받거나, 부족함을 느끼면 防衛指向的으로 옮겨간다.[9] 그러나 feedback 과정에서 이미 실패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行動型을 바꾸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급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각, 사고, 행위의 형태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굳어버린 형태를 수정하자면 고통스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고통을 피하면서 자기의 認識 形態를 固守하자 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固着的 認識構造는 주로 불안과 공포가 만연되는 분위기에서 형성되기 쉽다. 不安에 사로 잡히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 창조적인 사고를 못하고 판에 박은 듯한 접근방법을 취하게 된다. 또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주의력이 緊張領域으로 집결되어 널리 확대되어 있던 知覺의 場(Perceptual

9) Skinner, B. F:Science and Human Behaviour,(New York; Macmillan, 1953), pp. 29-30.

Field, 識野)가 축소되어 상황을 다시 해석하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진다.[10]

확산되어 있던 지각의 범위가 축소되고 위협을 느낀 時点에 고정화되면 지각된 여러가지 정보의 相互 交信이 두절됨으로써 판단력이 둔화되고 固定化된 非理性的 행동을 취하게 된다. 계속 긴장이 증가되면 결국 교통장애 현상을 일으켜 단편적이고 非統合的(분열적) 사고과정으로 이행된다.

金日成과 그 주변인물들이 갖고 있는 偏執症(Paranoia)현상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韓半島의 社會主義化」를 이데올로기로 하여 정권을 쟁취하고 北韓 社會를 統合시켰으나 「한반도의 사회주의화」에 固着되어 다른 가치나 이념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제는 현실상 불가능한 환상적 이데올로기임에도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정보만 擴大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 이데올로기의 특성으로 볼 때, 제시된 이데올로기가 실현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이데올로기 배후에 있는 최초 목표가 달성된 후에도 慣性의 法則처럼 이데올로기가 정책에 줄곧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이데올로기가 제시되었으나 이제는 逆轉되어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北韓 나름대로 북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信念體系로서 처음에는 북한의 再建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으나 점차 비현실성을 노정함으로서 妄想體系로 굳어져 북한의 지도층은 물론 북한 전체가 망상체계에 의존하는 集團 偏執症的(group paranoid) 病理現象을 나타내고 있다.[11]

---

10) Hull. C. L:Principles of Behaviour, New York, Appleton—Century, 1943, p. 95.

11) 李根厚,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편람 (DSM—Ⅲ—R)」
(서울 : 하나의학사, 1989), p. 129.
'망상체계는 뚜렷한 妄想性 病에 걸려 있는 다른 1명 또는 여러명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발전한다.'
Hitler는 집권초기 10년 동안은 독일 역사상 유례없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정신장애를 보인 집권후반기에는 핵심측근의 3/4정도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과정은 곧 이어 憎惡心을 培養하는 정치사상 교육과 연계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北韓의 정치사상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革命的 世界觀의 形成過程을 단계별로 구분하면[12]

첫째, 認識(인지)단계로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과 불합리한 제도, 갈등을 폭로 인식시키고,

둘째, 憎惡(감정)단계에서는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敵인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극렬하게 증오하며,

세째, 決心(행동)단계에서는 최후까지 기꺼이 목숨을 던져 鬪爭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진다는 것이다.

北韓의 이 3단계 心理意識改造 理論은 西歐 心理學의 인지 → 감정 → 행동으로 이어지는 태도변화 방식과 유사하나 최초 인식단계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視野를 한정함으로써 집착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식단계에서부터 葛藤을 自招하는 편집적 사고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단계의 증오심 배양이 주는 惡影響도 적지 않다. 과도한 증오심은 개인과 집단을 통해 전달되고 기성세대에 의해 다음세대로까지 계속 轉移(傳染)된다. 歷史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토와 자산을 강탈하며 그들 스스로가 약탈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힘을 계속적으로 強化코자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공격적이고 강탈적인 행동과 관련되는 증오심은 일반적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特定한 人格들의 屬性"이라고 말하고 있다.[13]

특정한 인격들이 갖고 있는 증오심은 사회전반에 걸쳐 緊張을 高潮시키고

12) 「사회주의 심리학」(東京 : 學友書房, 1974), pp. 53—61.
"적개심의 고취"는 共産主義者의 사상교육 과정에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방법이다. 急進 左傾化그룹에서도 이러한 3단계 의식화방법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相對」를 「敵」의 개념으로 대치.
宋大晟, 「좌경이데올로기」 (서울 : 명성출판사, 1987), p. 191, p. 126.

13) 허찬희, "적개심의 개관" 「대화」제4권 1호, 1987년 경북대의과대학.

체제를 넘어서까지 전염된다. 그렇게 될 때 선량한 사회 구성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集團精神에 맞추기 위해 본래의 自我를 위축시키고 外的 人格(external personality)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persona(假面人間性)이라고 불려지는 이 외적 인격은 集團이 요구하는 기대, 역할과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요구될 때에는 人格 解離(Persnality Dissociative)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14]

獨裁體制나 動員體制일수록 자아와 persona의 불균형이 심한 것은 사회 구성원이 독특한 개성을 갖기가 어려운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사회구성원은 2개의 가치기준을 갖게 되고 2분법적인 思考에 젖게 되며 感情의 표출에 있어서도 極端的인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腦分子生理學에 있어서도 극도의 증오감은 뇌를 긴장시키고 뇌혈액의 화학성분을 변화시켜 뇌의 情報處理 매카니즘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잠재의식에 충만한 증오심은 自律神經界를 混亂시키고 意識의 영역에까지 逆流함으로서 性格異狀(Personality Disorders)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15]

사실상 北韓은 지금까지 韓國에 대해 憎惡一邊倒의 심상을 형성해 왔다. 한국의 주민은 "美軍의 군화아래 짓밟히는 동포"들로 지도층은 "外勢와 결탁한 走狗"들로 묘사하여 인식시킴으로서 일면 민족해방의 使命感을 고취시키면서 일면 극렬한 憎惡感을 주입시켜 왔다.

증오심의 주입은 키워야 할 苗木에 거름대신 화공약품을 붓는 것처럼이나 人間의 成長에 크나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16]

---

14) 서울대의과대학, 「행동과학」,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9), pp. 30—31.
적개심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社會 生存에 적합한 假面形 人格과 反社會的 人格이 증가된다.

15) 이훈구, 「인간행동의 심리」 (서울 : 지학사, 1985), pp. 200—207, p. 237.

16) 李東植, 「현대인과 노이로제」 (서울 : 현대의학서적사, 1985), pp. 17—20.
腦血管은 머리카락 굵기의 1/200정도로 가늘기 때문에 증오심으로 인한 뇌혈액 성분의 변화는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증오심에 바탕을 둔 北韓의 行動方針이 합리적일 수 없으며 전략·전술상의 목표와 수단이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自明하다. 北韓이 유치원에서 성인교육에까지 활용하고 있는 증오심 주입 교육방법은 심히 왜곡된 對韓 心像을 형성케 하고 통일문제에 대해 대단히 非生産的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게 하며 韓國에 대해서도 여간 부담을 안겨 주는 게 아니다.

또한 증오심(Hostility)은 功擊性(Agression)을 유발시킨다. 증오심이 전적으로 파괴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 비해 공격성은 목표와 방법에 따라 파괴적이거나 건설적일 수도 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北韓體制의 공격성은 남쪽을 指向하는 데 문제가 있다.

Berkowitz는 공격행동에 있어서 學習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 공격성이란 선천적인 성향과 학습된 반응간에 복잡한 相互作用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7]

Freud는 증오심으로 인해 인간내부에 높은 情緖的 긴장상태가 유지될 때 공격에너지가 축적되어 暴力으로 나타나거나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Archer와 Gartner의 연구에 의하면 對外的 功擊性은 對內的 犯罪率과도 큰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1900년 이후 거의 110개국의 범죄율을 조사 비교하였는 바, 戰爭을 치룬 국가는 치루지 않는 국가와의 殺人 事件率에 있어 戰後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功擊行動을 合法化함으로서 심리적인 여파가 戰後에 공격성의 증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18] 이와 같이 증오심에 기인하는 공격성은 상대측은 물론 자체 내부에까지 否定的인 영향을 주고 있다.

17) Elliot Aronson, The Social Animal 윤진 번역, 현대 사회심리학 개설(서울 : 탐구당, 1984), pp. 168-169.

18) Dane Archer and Rosemary Gartner, "Violent Acts and Violent Times:A Comparative Approach to postwar Homicide Rates", American Socialogical Review:41(1976), pp. 937-963.

2. 價値觀의 差異 및 對話障碍

韓國이 급속한 산업화로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변화된 이상으로 北韓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위해 전통사상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협동정신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이나 북한에서는 워낙 개인경쟁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개인적 小英雄主義로 대체되고 말았고 敬祖思想도 미신적 요소가 있다고 배척한 대신 金日成家系의 우상화로 대체된 실정이다.

善惡의 價値基準은 오로지 공산주의 혁명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으로서의 德目은 혁명 수행을 위한 그 어떤 反社會的 反道德的인 행위도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北韓은 소련 心理學의 영향을 받아 인간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S(자극) → R(반응) 중간에 言語의 비중을 중시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투쟁적이고 攻擊的인 用語로 충당해 나갔다. 唯物論 심리학자 Vygotsky는 언어는 자극에 대한 무조건적인 反射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언어를 內面化함으로서 실용적 지능을 사회적 지능으로 변환시킨다고 주장하였다.[19]

言語는 이처럼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행동을 조직계획함으로서 환경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고 北韓에서는 언어를 이용하여 共産主義 敎養(Indoctrination)과 洗腦(Brainwashing)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또 '言行은 思考를 결정하고 사고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기본 명제에 따라 北韓에서는 용어의 개념을 合目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언론 매체는 선전 선동에 적합한 口號와 공격성을 내포한 언어로 일관하여 보도하고 있다.

北韓이 人間中心的인 사상이라고 統治哲學으로서 主體思想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용어부터 극히 人間을 手段化하는 계급적 원쑤,

19) L. S Vygotsky, Thought and Language (Mass:MIT press, 1974), pp. 30—35.

몸 바쳐 투쟁등 비인간적 개념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北韓 全域이 인간보다는 혁명과 투쟁을 중시하는 言語의 魔術에 걸려 있는 공포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20]

이러한 정치사상적 배경 때문에 南北韓의 價値觀 敎育에서도 심각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韓國에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 정서순화, 국가관 정립, 기초체력 배양 등에 敎科를 할당함에 비해 北韓은 공산주의 원리원칙, 혁명투사정신 함양, 국방체육강화 등 政治目的 達成을 위한 내용으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다.

또 社會化 過程時의 학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成人이 되었을 때의 가치관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남북한 접촉시에는 認識構造와 價値基準이 달라서 對話를 용이하게 진행하지 못한다.[21] 인식구조가 아무리 상이하다고 하더라고 健全하고 相通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 점차 대화를 확대해 갈 수 있으나 가치판단에서 정치적 失益計算이 첨가됨으로서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이 社會心理學的 견지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相異한 가치를 內在化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南北韓間에 對話障碍 현상을 빚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22]

3. 惡循環的 安保 딜렘마

南北韓이 서로를 위협적 존재로 보고 安保手段을 강구하고자 할 때 무력경쟁이 확대되어 가는 악순환적 딜렘마(Security Dilemma)에서 벗어나지 못

20) 「노동신문」 1987. 7. 15, 1—2면 참조.

21) 정양은, 「사회 심리학」 (서울 : 법문사, 1981), p. 74.

22) 對話者가 이중적이거나 적개심에 차 있을 경우 공감(Empathy)형성이 어렵다. 대화에는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 非言語的(Non—Verbal)대화의 비중이 70—80%를 점유한다. 잠재의식·무의식적 심리상태가 對話의 成敗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Paul A. Dewald, 金基錫 역,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8), pp. 125—145.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軍事力의 均衡은 혁명의 포기, 자본주의 진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진영에서는 항상 상대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黨의 노선과 이데올로기에 부합되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겠다.

北韓이 이와같은 공격적인 자세로 임할 때, 韓國은 北韓의 남침의욕을 좌절시킬 정도의 평시 군사력을 유지하여야만 국가 보위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쪽은 強勢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한쪽은 弱勢를 만회하려 하겠다는 의도에서 군비증강의 논리가 계속 전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3]

軍備增強 意思에 앞서 상대에 대한 인식과 심상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增幅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양측은 서로의 실상과 실체에 입각한 판단보다는 誤解와 誤識(misperception)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John Stoessinger의 개념 범주를 빌려서 보자면 서로의 Image, 서로의 상대방 성격 인식, 서로의 상대방 의도 인식, 서로의 상대방 힘과 역량의 인식에서 誤認과 曲解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認識 閉鎖(Cognitive Closure)경향이다. 정책결정자가 기존 정책이나 保有 이미지가 새로운 사실에 의해 비능률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문이나 개선의사를 保留하거나 看過하려는 것이다. 南北韓은 서로가 敵의 개념에서 同伴者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적이라는 기존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Paradigm을 고치지 않고는 악순환적 關係 惡化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南北韓의 이러한 相互 不信關係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에 Mirror Image가 있다.[24] 상대에 대한 實象을 평가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인지의 왜곡과정을 거쳐 서로간에 상대에 대한 虛像을 놓고 평가한 뒤 非

23) 梁性喆, "남북한 무력갈등과 새로운 대안"「남북한의 평화구조」(서울 : 법문사, 1990), pp. 269-271.

24) 閔丙天, 「전환기의 통일문제」(서울 : 대왕사, 1990) p. 339-345.
전통적으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두 국가가 서로를 사악한 존재로 보고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는 신념상태를 유지.

現實的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南北韓間에 진행되어 온 비생산적인 외교·군비 경쟁은 이 Mirror Image가 많이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딜렘마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事物을 判斷하는 論理構造이다. 우리의 경우, 腦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무지불식간에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으로 이어지는 形式論理에 따르는 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北韓은 「正(현실) → 反(목표) → 合(투쟁)」으로 이어지는 辨證法的 思考를 택하는 수가 많다. 본시 변증법은 대화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나 공산주의자들의 革命理論에 적용되면서 대화와는 거리가 먼 투쟁적 행동철학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對話가 斷絶된 상태에서 대안 선택에 관련된 이론으로 罪囚의 딜렘마(The Prisoner's Dilemma)게임이 있는데 이 이론 역시 南北韓間의 군비경쟁을 어느정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다. 별도로 收監된 두명의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시 가벼운 求刑을 받으나 어느 한 쪽이 자백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극히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自白함으로 중간정도의 刑을 받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다.[25]

南北韓간의 군비경쟁에 있어서도 서로 믿을 수 있는 대화의 窓口가 있거나 서로의 진실된 입장을 감지할 수 있으면 군비를 동결하거나 사전 타협할 수 있는 데 단절된 상태에서는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조치하기 전에 自己 保衛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비유할 수 있다.[26]

이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南北韓間의 非生産的 競爭은 비동맹권과 開途國들이 南北韓에 대해 원조 경쟁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민족 에너지를 소모시켜 온 게 사실이다.

---

25) 李 章,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南北韓의 역할" 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자료, p. 5.
죄수의 딜렘마 이론은 죠지 케난이 알 카포네를 체포하여 자백받을 때 처음으로 쓰여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game이론이다.

26) Wolman, B. The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이윤재 역, 정치지도자의 정신분석(서울 : 태양문화사, 1978), pp. 265-272.

Ⅳ. 南北韓의 葛藤類型과 體制行動

1. 南北韓의 葛藤形態

南北韓이 다시 統合되어 대륙과 해양세력의 調整者로서, 東北亞의 平和主導者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통일을 위한 각자의 體質改善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고 체제내부에서는 통일을 향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위한 內部協商이 아직 變數로 남아 있다. 南北韓간의 갈등은 이처럼 자체 내부와 남북한간에 정책결정과 협상에서 여러가지 葛藤 形態가 나타나고 있다.

Lewin은 葛藤 場面을 접근-회피라는 두가지 상반되는 反應傾向으로 설명하면서 세가지 주요 갈등형태를 제시하였다.[27]

첫째, 接近-接近갈등이다.

두가지가 다 바람직하거나 이끌리는 行動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北韓의 입장에서는 "인민경제발전"이냐 "군사우위계속유지"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둘째, 回避-回避 갈등이다.

두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로 그 장면에서 벗어나려 할 때가 많다. 생명을 걸고 체포해야 하는 수사관이 물러나고 싶으나 동료가 대신 위협받게 됨으로 行動選擇이 극히 어려워진 상태와 같다.

---

27) Lewin, K. A,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K. E. Zenev & D. K Adams trans), New York:Mcgraw-Hill, 1935.

북한이 "閉鎖政策"도 "社會의 落後"도 둘다 싫은 경우와 비슷하다.

셋째, 接近一回避 갈등이다.

같은 목표에 대해 相反되는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이다.

北韓指導層도 "개방"이 좋지만 "체제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만약 北韓의 지식인과 전문관료는 개방을 원하고 軍 고위층과 강경파 黨僚들은 폐쇄정책을 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二重的 接近一回避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Lewin의 이 갈등모델은 韓國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북한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北韓과의 교류·협력을 반대하는 그룹은 없으나 급속한 군비통제추진에 대해서는 軍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직 自主國防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통제는 국가보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세가지 갈등 모델중 南北韓 問題에 가장 근접된 모델은 接近一回避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이념과 현실의 gap, 名分과 實利에서의 선택, 自己評價와 相對認定에서 오는 不安등이 接近一回避 갈등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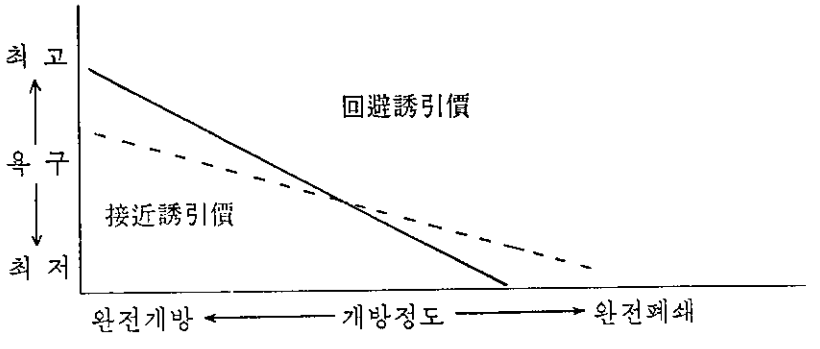

〈도표1〉 北韓開放에 대한 接近一回避葛藤

接近一回避 갈등에서는 바람직한 목표가 가까와 질수록 欲求水準은 점점 높아지나 싫어하는 목표를 회피하려는 욕구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회피경향이 접근경향보다 더 傾斜度가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接近一回避 갈등에서는 接近一回避의 욕구정도가 비슷할 때까지 지그재그를 그리며 調和点으로 접근을 계속한다.

이처럼 北韓의 開放問題도 개방에 대한 접근욕구와 회피욕구가 비슷할 때까지 약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며 開放程度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北韓의 고위층이 단호한 政策決斷으로 완전개방을 실현코자 한다면 이미 그때는 심리적인 갈등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意識構造와 가치판단아래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 모델은 해당되지 않는다.[28]

2. 南北韓 葛藤構造의 特徵

현재 韓半島는 冷戰的 政治軍事的 갈등구조를 마지막 標本처럼 보여주고 있는 對峙 地域으로 주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양대진영이 대치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비타협적이거나 일방적인 태도, 高度의 전술, 공작적인 교섭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면 南北韓은 어떻게 해서 타 지역과는 特異한 葛藤構造를 보여주고 있을까 되돌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南北韓은 한세대 기간이 넘는 식민지 통치를 겪으면서 영토의 主人다운 主體性을 상실해 버렸다.

식민지 교육과정에서도 民族魂을 제거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함으로서 민족사상이나 역사의식을 키워올 수가 없었고 해방후 精神文化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급속히 밀어닥친 외세를 감당해내지 못함으로써 冷戰의 前哨역할을

28) Kurt Hauss, Medical Psychology, 윤홍섭 역, 의학심리학(서울 : 성원사, 1986), pp. 146—147.

떠맡게 되었다.

둘째, 양대진영의 代理戰(proxy war)과 같은 6. 25 전란에서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死傷者를 발생시켰다.[29]

양측이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기성세대의 상대측에 대한 뿌리 깊은 感情은 후계 세대에까지 轉移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최근에 이르기까지 zero-sum game에 따른 경쟁으로 상대측의 의도나 行動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國際社會에 투입된 민족에너지가 再投資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넷째, 安保優先主義에 입각하여 軍의 肥大化를 가져왔고 반대로 사회복지 및 소외계층에 극히 소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北韓이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韓國은 GNP의 5. 7~5. 8%를 군사비로 사용하나 극빈자 및 장애자를 위한 복지예산은 군사비의 1. 8%에 불과하다는 것은 安保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하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對話채널(판문점)은 있으나 당사자끼리 교섭·소통하려하지 않고 주변국에 依存的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실보다는 宣傳效果에 치우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反對와 統合」을 동시에 수용하려는 兩面性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30] 이러한 대책구상은 좋게 말하면 有事時에 신축적으로 대비하는 A, B안을 준비하는 것이나 나쁘게 말하면 兩價感情(ambibalance)을 표출시켜야 하는 것으로 國民精神

---

29) 國防部 전사편찬위원회 資料室 통계
南北韓 민간인 사상자, 南北韓 군인 사상자, 포로를 합치면 5, 310, 946명에 달한다.

30) 갈등에서 兩價感情이 생기고 여기에 stress가 가해지면 분열적 사고장애를 일으킨다. 갈등적 指示, 이율배반적 教育은 정신장애의 큰 원인이 된다.
李東植 博士(한국정신치료학회장)는 主體性을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의 要諦이며 역사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건전한 國家行動의 前提라고 주장하고 있다.

健康에 극히 해로운 것이다.

여섯째, 상대측의 위협적 요소가 體制維持에 필요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31]

韓國은 經濟問題에 제1차적 비중을 두어 옴으로서 오로지 통일문제에 정권의 死活的 기반을 두지 않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에는 軍國主義的 戰時産業構造를 갖추고 있다고 할 정도로 통일전선형성과 군사력 강화에 힘써왔다.

이상의 특징은 신데땅트 조류를 타고 緩和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셋째 항과 여섯째 항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東•西獨처럼 분단이후 계속 接觸 交流가 있었거나 라디오, T.V 등으로 서로를 體驗的으로 認知할 수가 없었고 간간히 소통되는 정치적 대화만으로는 갈등구조를 변형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 體制行動과 葛藤解消

前項에서는 南北韓의 갈등구조의 특징을 여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갈등구조 개선과 갈등해소를 위한 行動單位를 검토한 후 접근방향을 摸索코자 한다.

갈등해결의 주역이 개인이라면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간에는 개개인을 둘러싼 체제가 기본 行動單位가 되어야 行動방침과 國家戰略이 부합된다. 그러니까 사회전체가 하나의 行動主體로서 관찰되면서 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體制行動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體制가 갖고 있는 4대기능으로서

첫째, 財貨의 생산과 획득(경제)

31) 具永祿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서울 : 법문사, 1990), pp. 272-279.

둘째, 바람직한 價値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정치)

셋째, 下位體系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調整과 연대성 확립 (사회통제)

넷째, 구성원의 社會化와 동기 부여(교육, 가정)등이 있다.

사회전체는 이상과 같은 기능이 분담되어 활동되면서 존속하는데 분담된 기능별로 본 활동은 制度活動이라고 부르고 각 기능을 망라한 사회전체의 行動을 體制行動이라고 일컫는다.[32]

南北關係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몇개 부서만의 능동적 行動을 대상으로 할때는 組織行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대한 반응을 관찰할 때는 역시 體制行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確率에 근거한 이 體制行動의 諸 事實은, 社會變動이 內部로부터 요구될 경우에는 사회적 분열이 수반되지 않고, 문화의 非物質的 측면보다는 物質的 측면에서, 象徵的 요소보다는 非象徵的 요소에서 먼저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포괄적일수록 해결압력도 높아지고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깊을 수록, 論爭에 휩쓸려 있는 조직에 대한 관여도가 클수록 갈등이 격렬해 진다고 한다. 이로 볼때 南北韓간에는 기능적 접근을 위한 體制行動을 誘發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葛藤을 줄이고 구체적인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行動을 유도하기 위해 Action Research기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방법은 바람직한 인격특성의 조장, 인간관계 개선, 집단간의 갈등해소, 사회적인 실천관리를 社會工學的으로 연구하도록 한 것이다

Action Research의 일반적인 순서는, 「問題의 소재 규명→도달목표의 선정→가용수단 검토→行動의 제1단계 결정과 실천→行動의 기록과 평가(事實發見)→계획수정, 보완→行動의 제2단계 계획과 실천」으로 진행되며 螺旋形

32) 金元卿 : 「행동과학」 (서울 : 박영사, 1976), pp. 109-110.

의 循環過程을 밟는다.

그러나 Action Research는 경영조직에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北韓과 같이 대하기 힘들고 경직적인 체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또 우리 측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行動主體이기 때문에 遠隔的으로도 영향을 끼치거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接近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색한 것이 心理矯正과 行動修正(Behaviour Modification)에서 活用되는 기법을 南北韓관계에 맞추어 行動과학적으로 묶어 체계화하는 것이다.[33]

33) 우리나라에서는 行動科學에 기초한 체제행동이나 국가행동에 대한 연구자료를 찾기 어려우나 先進國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試圖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민 통치, 전쟁을 겪었거나 社會病理가 많은 국가는 행동과학적 방법을 통해 正常社會에로의 復歸期間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行動科學的 接近을 통한 南北韓의 葛藤解消方案

人間의 心理와 行動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교정과 행동수정에 관련되는 技法은 45~50여 종류가 있으나 모두가 바람직한 意識構造와 바람직한 行動을 形成하거나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南北韓문제는 개인行動으로 정책결정권자에서부터 體制行動으로 사회전체에 이르기까지 規模의 大小에 따른 行動이 기본단위가 되어 이제 民族和合 지향적인 行動變化에 당위성을 부여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應用 可能한 기법과 방안만 提示하고자 한다.

1. 韓國의 對北 MODELING

韓國은 北韓을 rival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생 또는 선생의 입장에서 본보기만 보여주는 것이다. 韓國은 南北韓이 본받아야 할 model로써 국내와 국외에서 韓國이 제3국의 비판을 불허할 정도의 모범을 보여 주게 되면 韓國의 行動이 南北韓의 心象에 投射되고 南北韓도 의식, 무의식간에 韓國을 닮아 가는 것이다.

北韓이 사소한 경우라도 바람직한 行動으로 나올때에는 즉각 적절한 利益을 제공하거나 좋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럴때 韓國의 行動論理는 "民族發展"에 근거하여야 한다. 과거의 "反共과 統一"은 이념상으로도 모순적이며 갈등을 야기시킨다.

韓國이 北韓의 model이 될수 있는 行動은, 국제사회에서의 國家利益에 반하지 않는 對北協調, 南北韓이 같이 참여한 스포츠게임에서 北韓을 위해 가끔 양보하는 것, 國際會議에서 北韓을 감싸주는 것, 해외출장 나온 北韓人士에게 인적 물적 성의있는 협조, 韓國팀을 제외한 국제시합에서 北韓팀을

응원해 주는 것……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다. 그리고 南北韓간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T. V드라마나 인쇄물, 보도를 중지하는 것도 상호간에 model을 촉진시키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 北韓의 赤化意思 포기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model行動중에 北韓의 工作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model行動에 대한 反政府行爲가 접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接觸教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南北韓 接觸의 SHAPING

처음부터 원하는 行動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거나 이어질 수 있는 始發行動을 찾아 目標行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가는 것이다. 漸進的인 接近法(the method of successive approximation)또는 새로운 行動形成法이라고도 한다.[34]

Shaping 절차로서는,

첫째, 目標行動(terminal behavior)을 선정하고
둘째, 始發行動(starting behavior)을 탐색하며
셋째, 적절한 強化物(reinforcement)을 준비하면서
넷째, 形成過程의 중간단계(shaping step)를 설정한다.

여기에서 目標行動은 포괄적인 行動보다는 具體的인 行動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始發行動이나 목표에 접근하는 行動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Incentive나 기쁨을 제공한다.

南北韓의 接觸對話시 결렬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신사도를 지키는 것을

34) 이성진, 유효순,「행동수정의 기법Ⅱ」(서울 : 교육과학사, 1984), pp. 86—89.

目標行動으로 가정해 볼때 다음과 같이 推進할 수 있다.

始發行動으로서는 책임전가 안하기, 웃으며 헤어지기, 再會의 약속, 공정한 언론태도, 私的으로는 의리지키기…등을 구상할 수 있다.

적절한 강화물로서는 상대에 대한 名譽保護, 칭찬, 부담스럽지 않는 膳物, 제3국에서의 호의적 對北 態度表示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中間段階로서는 결렬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은 이쪽에도 있다는 식의 태도표시, 상대에 대한 期待가 아직 희망적이라는 立場表明등을 들수 있다.

이 방법은 목표行動을 선정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가운데 接觸이 形成되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35]

3. 脫減作的 北韓 開放

體系的 脫減作的 方法(Systematic Desensitization)이란 不安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배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불안을 줄이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다. 不安에 대한 忍耐力을 增進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Joseph Wolphe가 주장한 것으로 "만일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이 있는 곳에서 불안과 反對關係에 있는 반응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不安反應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면 이들 자극과 불안 반응 사이의 유대는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36] 불안에 대한 자극은 實物일수도 있고 비데오 영상이나 활자매체일수도 있다.

이 방법의 순서는 恐怖의 位階 또는 불안의 減少節次를 결정한 뒤 단계적으로 不安狀況에 노출시켜 가는 것이다.[37] 北韓이 완전개방을 체제의 붕괴로

35) 김동연 외 2인 편저, 「행동수정이론과 실제」, (전주 : 신아출판사, 1989), pp. 22—27.

36) 서울대 의과대학편, 「행동과학」,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89), pp. 46—47.

37) 李根厚 외, 3인 공역, 「행동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하나의학사, 1989), pp. 111—125.

생각한다면 外部文物에 免疫이 생기도록 順理的이고 漸進的으로 개방해 가도록 협조해주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지금 開發을 추진중인 金剛山, 白頭山지역이나 元山항구지역 등을 자유로운 특구지역으로 설정하여 外交關係 일꾼들을 근무하게 한다든지 하여 收益을 늘이고 제3국에서 北韓과 합작회사를 차려 北韓으로 하여금 國際社會에 適應力을 키워주기도 하면 北韓의 개방공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이 北韓의 不安에 대해 共感하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順序	不 安 位 階	비 고 (안정감증대책)
1	완전 폐쇄	動 機 賦 與
2	特區 選定	이 익 보 장
3	3개항(원산, 남포, 청진) 개방	자 신 감 부 여
4	관광개발	이 익 擴 大
5	해외 南北企業 合作	企 業 指 導
6	南北 視聽覺資料 교환 방영	점 진 적 확 대
7	통신 및 氣象資料 교환	技 術 交 流
8	南北 經濟交流	체 제 보 장 경 제 발 전
9	南北道路疏通	産業構造 보완
10	완전 개방	대등한 立地保障

〈도표2〉 北韓開放의 不安位階

4. 肯定的 行動에 대한 REINFORCEMENT

바람직한 行動이 나타났을 때 즉각 보상함으로써 行動과 補償을 條件化시켜 바람직한 行動의 頻度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보상은 後續刺戟이 되어 미래의 행동발생을 향상시키게 된다.

반대로 바람직한 行動이 나타났을때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行動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否的 強化(Negative Reinforcement)라고 한다.

또하나의 자극이 본래는 強化力(Reinforcement Influence)이 없었으나 강화가 되는 자극(Reinforcer)과 짝지어져 제공되므로 강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때 이 자극은 條件強化(Conditioned Reinforcement)자극이라고 부른다. 이때 다른 강화자극과 교환하고 모을 수 있는 條件強化刺戟은 TOKE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強化(Reinforcement)방법은 주위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조건이 형성되는 初期 段階에서는 자극이 제공되어지는 즉시 후속 강화자극(Incentive, 이익, 즐거움 등)이 따라야 효과가 크다.[38]

北韓이 韓國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行動은 상당히 많이 있다. 對南비난방송에서 정도를 넘어선 非難 報道를 줄여 간다든지 休戰線에서의 고의적 휴전협정위반을 줄이는 것, 豊漁時 限界漁路線上의 韓國어선을 묵과하는 것, 테러를 자행하지 않는 것, 戰鬪序列에서 극도의 非民族性을 나타내고 있는 生化學부대는 후방으로 돌리거나 폐지하는 것, 韓國내의 反政府勢力에 대해 흑색방송을 않는 것, 국제사회에 韓國의 치부를 확대 악선전하지 않는 것…등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行動중에서 北韓이 어느 하나라도 선택할 시에는 즉각적

38) 김동연 외 2인 편저, Op city, pp. 15—22.

인 補償을 하고 北韓이 감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다. 北韓이 韓國으로 받는 惠澤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極秘裡에 도와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行動을 유발시킬 수 잇는 Incentive나 요건은 주로 경제적인 혜택이 되겠지만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適在適所에 提供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5. 否定的 行動에 대한 TIME-OUT

환경이나 상황에 不適切한 行動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멸(extinction), 罰, Time-out,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등이 있으나 南北韓 문제에 대해서는 Time-out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Time-out은 부적절한 行動에 대해 正的 強化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問題 行動을 촉발시킨 대상을 잠시 隔離시키는 방법이다.

北韓은 지금까지 東方의 사회주의 哨所라고 자부하여 왔다. 北韓의 대남전략과 美國에 대한 도전은 통치기반형성에 一助함은 물론 사회주의권의 代辯者로서의 幻想的 역할기대와 결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너무 특이한 行態를 보여주고 있고 이 특이한 행태가 北韓체제의 理念과 生存方式을 다듬어 간다고 볼 수 있다.

Time-out방법은 이 北韓의 특이한 행태를 問題行動으로 대치시켰을 때 北韓의 孤立化를 통해 改善시켜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北韓의 고립화는 외교를 통한 직접적 北韓壓迫이 아니라 北韓에 대해 줄 수 있는 혜택을 거두게 하거나 反發없이 정치적으로 "氣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韓國에서 北韓의 부정적 行動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直接對應式 行動은 효과가 크지 않다. 北韓의 긍정적 行動은 같은 同族으로서 지

지, 칭찬하고 부정적 行動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認識構造와 논리의 결함, 모순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지적하는 것이다.

北韓 자신이 言語의 魔術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이 같은 정도의 感情이 섞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식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對話障碍와 言語鬪爭의 攻防戰으로 에스컬레이트된다.

따라서 韓國은 北韓의 末梢的 反應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러한 반응과 태도 이전의 北韓의 意圖와 心象에 대해 윤곽을 잡고 계속 좋은 감정으로 北韓이 고통스럽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식구조를 調整시킬 수 있도록 협조, 유도해야 한다.

韓國이 이러한 遠隔的 行動變化 方式을 채택할 때 정책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北韓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Interest Group이다. 그중에서도 北韓이란 폐쇠사회에서 對外 情報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 權力機關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北韓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왜곡된 가치관과 인식구조를 떨쳐버리지 못해 6·25 당시의 對南觀과 統一論理에서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39]

北韓사회의 이 Power-Elite들이 認識의 轉換을 시도하고 「事實과 올바른 視角」에 입각한 情報處理를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은 北韓社會의 주춧돌은 고사하고 민족사의 걸림돌로서 크게 비판받을 것이다.

6. 認知的 行動修正

認知治療(Cognitive Therapy)의 大家로 알려진 Albert Ellis는 문제의 해결책이 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딪히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合理的 心理治療(Rational Therapy)라는 방법을 개발하였다.[40]

39) 都興烈,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비교」, 統一院, 1977, pp. 7-8.

40) 行動科學에서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金元卿, 전게서, p. 276.

또 Donald Meichenbaum은 바람직한 行動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自己訓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의 自己指示(Self Instructional)방법은 불안이나 긴장을 적당하게 대처하는 行動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지시하고 萎縮 또는 過剩行動의 조정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대상자가 갖고 있는 思考方式이나 신념, 태도, 그리고 견해들을 변화시킴으로서 바람직한 行動을 성취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北韓 指導層이 편집적이고 환상적인 통일사업에 強迫觀念이 고착되어 계속 體制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면 北韓은 국제사회에서의 自生力을 배양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문제는 "價値의 不一致"를 가져와 협상에서 "理解의 不一致"보다는 한결 성공율을 희박하게 만든다.[41]

北韓은 해방후 반세기가 되어가는 이즈음에도 각종 보도, 활자매체, 를 통해 金日成과 그 주변인물들이 滿洲에서의 행한 소규모 抗日鬪爭만을 주민의 Model로 제시하고 있다. 韓國이란 現實을 外面하면서 過去에 執着하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할때 北韓이 未來像이 바르게 刻印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北韓社會에서 그나마 어느정도 北韓의 位相과 現實을 自覺할 수 있는 지식인과 언론인, 기술관료에 대한 자료지원과 정보의 제공이 요망된다. 北韓의 學界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國際政治學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인중에는 會談時 서울을 7~8차이상 왕래한 사람도 있다.

韓國에서는 北韓의 심장부를 일거에 움직이려 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韓國과 접촉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중에 이러한 現實認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부터 公開 또는 無言의 共感帶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다. 北韓은 自我(ego)가 매우 취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비판없이 脫理念的으로 접근

41) 朴漢植, "민족공동체의 이론적 배경"「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1989, 統一院, p. 198.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衝擊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刺戟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北韓이 갖고 있는 信念體系에서 비합리성을 발견하게 되어 內部로부터의 변혁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北韓에서 韓國을 보는 만큼이나 왜곡되지는 않으나 韓國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韓國은 분단이래 北韓으로 인하여 받은 괴로움 때문에 의식구조의 心層에까지 불신과 被害意識에 젖어 있다. 北韓이 대화를 제의함과 동시에 땅굴을 굴설(70년대초 적십자회담)하고 아웅산테러를 자행(80년대초 3자회담)하였기 때문에 항시 韓國은 北韓과의 대화에서 眞實性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이르렀다.

그러나 7.7特別宣言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北韓은 적이 아닌 새시대 民族共榮의 동반자이다. 적어도 北韓은 적이 아닌 相對이며 문제가 있다면 患者일 뿐이다. 이기고도 시합이 깨어지면 모두 진 것이고 수술 잘하고도 환자가 죽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韓國은 北韓을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도 없는 만큼 힘을 바탕으로 北韓의 二重性을 경계하는 가운데 그 이중성 중에도 北韓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韓國이 키워주는 방법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同質性을 확대시켜 가며 病理的인 요소는 위축시켜 가는 것이다.[42] 조심스럽게 北韓을 童心의 세계로 이끌어 가면서 北韓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長点과 합리적인 요소 등을 발견해 내어 民族發展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주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北韓의 主體思想을 예를 들더라도, 韓國에서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北韓의 統治哲學이 되어버린 만큼이나 「교조적인 김일성주의」에서 「진정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나 인권차원에서 주체사상의 再解釋을 시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42) William & Sahakia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서봉연, 이관용 공역, 심리치료와 카운셀링(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7), pp. 397-398.
李根厚 博士(大韓神經精神醫學會長)는 북한이 외형적으로는 강한듯 하나 內面的으로는 매우 위축되어 있어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有利할 것으로 보인다.

Ⅵ. 限界點 및 展望

지금까지 논술한 내용은 모두 南北韓의 갈등해소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試案으로서 하나의 假說體系를 구상할 것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묘한 南北韓 관계에 있어서는 행동과학이 주는 限界를 무시할 수가 없다.

行動을 강조하였으나 인간의 意識이 주는 비중을 소홀히 할수 없고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행동, 체제행동은 環境과 구성원의 個性에 따라 行動의 原理에 모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또 南北韓은 다양한 압력집단과 이익집단이 혼융되어 있어 대표적 행동이라고 표현할 만한 뚜렷한 사회체제의 방향과 경향을 포착하기 어려울때도 있다.

行動科學으로 성립되려면, 1인 이상의 관찰자에 의해 인식될 客觀的 現象만을 이론의 확증으로 삼아야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배제하고 오직 計量化를 통해 檢證과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自然科學 영역에서 개발된 객관적인 이론과 기법들을 援用하여 관찰 분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때[43] 본 연구는 참으로 日淺하여 오히려 하나의 學究的 冒險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 행동과학분야에 臨床心理와 精神醫學의 관련성이 깊어지고 학계에서도 人間問題해결에 대한 기대가 이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제도나 이념보다는 인간에 의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함을 볼때 본 연구는 조심스럽게 南北韓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하나의 視角을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기 통일문제는 워낙 복잡하여 어느 事案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感情과 認知過程을 통해 행동이 변화되고 상대방에 대한 心象을 토대로 의사가 결정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고려하면 南北韓은 먼저 서

43) 「행정학 사전」 (서울 : 고시원, 1985), p. 959.

로 肯定的이고 發展的인 心象이 형성되도록 범국가적 敎育改革과 함께 內治에 완벽을 기하는 政治發展을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國은 北韓이 安定的으로 變化할 수 있도록 北韓과의 끊임없는 關係形成(Rapport)을 이루어 가야 하며 문제점이 北韓側에서 발견된다면 北韓中心的 문제해결 방식으로 협조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異質化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生存과 快樂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은 마찬가지인 만큼 行動科學은 개인과 체제문제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분단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가치관과 인식구조가 形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될 民族社會에 적합한 行動樣式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가까이는 분단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宿題일 뿐 아니라 멀리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韓人社會의 통합에도 기여할 汎民族的 課題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 內 文 獻

高準鳳, 心理戰略試論(서울 : 고려서적, 1982)

具永祿 외, 南北韓의 평화구조(서울 : 법문사, 1990)

김남성, 행동요법(서울 : 배영사, 1988)

김대운 외, 군사심리학(서울 : 공학사, 1983)

김동현 외, 행동수정이론과 실제(전주 : 신아출판사, 1989)

김영환, 임상심리학원론(서울 : 하나 醫學社, 1989)

金元卿, 행동과학(서울 : 박영사, 1976)

김준섭 외, 논리연구(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5)

白尙昌, 맑스 모택동 김일성 그리고 한국사회
(서울 : 한국사회병리연구소, 1989)

吳世哲, 조직행동(서울 : 박영사, 1983)

李根厚 외, 행동치료의 이론과 실제(서울 : 하나 醫學社, 1987)

李東植, 현대인과 노이로제(서울 : 현대의학 서적사, 1985)

_____, 韓國의 主體性과 道(서울 : 일지사, 1989)

李昊宰, 韓半島군축론(서울 : 법문사, 1989)

장상호, 행동과학의 문제와 방법론(서울 : 교육출판사, 1988)

정양은, 사회심리학(서울 : 법문사, 1989)

鄭正佶, 정책결정론(서울 : 대명출판사, 1988)

趙斗英, 임상행동과학(서울 : 일조각, 1986)

洪大植, 응용사회심리학(서울 : 박영사, 1989)

慶北大 의과대학, 대화(대구 : 경북대 의과대학, 1987)

서울대 사회학과연구실, 갈등과 권력(서울 : 법문사, 1981)
서울대 의과대학, 행동과학(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9)
韓國心理學會,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서울 : 성원사, 1989)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人의 성격(서울 : 고려원, 1984)

2. 北 韓 資 料

「思想意識을 어떻게 개조시킬 것인가」, (平壤 : 노동당출판사, 1958)
「사회주의심리학」, (東京 : 學友書房, 1974)

3. 外 國 文 獻

Abcarian, G. Monte Palmer, Society in conflict, An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서사연 역, 갈등의 사회이론(서울 : 학문과 사상사, 1985)

Aronson, Elliot, The Social Animal, 윤진 역, 현대사회심리학개설(서울 : 탐구당, 1984)

Barbu, Zevedei, The Problems of Historical Psychology,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3)

Berkhofer, R. F. Jr, A Behavioral Approach to Historical Analysis, (New York:The Free Press, 1968)

De Bono, Edward, Conflicts, 최화섭 역, 갈등해소의 논리와 방법(서울 : 韓國經濟新聞社, 1987)

Davison, G. C, Abnormal Psychology, 4rd Edition (New York:John Wiley & Sons, 1986)

Dewald, Paul A,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金基錫 역,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서울 : 고려대 출판부, 1988)

Flippo, E. B, Management A Behavioral Approach (Boston:Allyn and Bacon, 1969)

Janowitz, Morris, Political Conflict, (Chicago:Quardrance book, 1976)

Kirkpatrick, S. A,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tical life, (Belmont: Duxbury press, 1972)

Ornstein, R. F, The Psychology of Consciousness, 이봉건 역, 의식심리학(서울 : 성원사, 1989)

Polak, F. L, Prognostics, 林雄二郎 역, 豫測學, (東京 : diamonds社, 1974)

Sahakian, W. S, Pychotherapy and Counseling:Studies in Technigue, 서봉연 이관용 역, 심리치료와 카운셀링,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7)

Solomon, Richard H, Asian Security in the 1980s, by The RAND Coporation 1980.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inc, 1980.

Tomson, R. F, The Brain, 金基錫 역외, 腦, (서울 : 성원사, 1989)

Triandis, Harry. C,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John Wiley & Sons, Inc, 1971)

Wolman. B. B, The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이윤재 역, 정치지도자의 정신분석(서울 : 태양문화사, 1978)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Mass:The MIT Press, 1974)

阪 野 亘, 行動論 政治學, (京都 : 世界思想社, 1976)

岡部慶三 外, 社會的 行動, (東京 : 培風館, 1969)

北韓의 女性政策에 관한 硏究

윤 미 량*

目 次

Ⅰ. 序 論
Ⅱ. 社會主義的 女性政策
Ⅲ. 北韓의 社會主義 移行段階
Ⅳ. 北韓 女性政策의 展開過程
Ⅴ. 評價와 展望
參 考 文 獻

Ⅰ. 序 論

1. 硏究目的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政策目標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政策手段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公式的으로 決定하고 闡明한 基本方針[1] 이라고 볼 때, 여성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 달리 말해 바람직한 사회질서 속에서의 여성의 地位와 役割을 規定하고, 이를 實現시키기

* 調査硏究室 • 行政事務官

1) 정정길, 정책결정론(서울 : 대명출판사, 1988), p. 44.

위해 권위있는 政府機關이 諸政策手段을 동원하는 基本方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국가가 추구하는 全體的 社會秩序의 不可分의 一部로서, 全體社會秩序와의 相合性을 지닌다. 다시말해 여성정책은 남성과 대립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질서 속에서의 여성을 향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고려된다.

여기서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가[2] 추구하는 사회질서가 어떠한가이다. 이 사회질서의 내용에 의해 女性政策의 目標와 手段이 결정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그 본질상 "社會主義的 秩序의 實現"이라는 강력한 이념적 지향아래 모든 영역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간여한다.

자본주의가 社會 諸勢力間의 오랜 투쟁의 결과 승리한 세력이 現實의 勢力關係를 正當化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한 현실적 이론체계, 즉 現實의 理論化임에 반해, 사회주의는 원시공산사회에 대한 假說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세력관계를 혁명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 가설적 이론체계였으므로,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즉 理論의 現實化인 사회주의국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현실을 자신의 이론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現實 再構成의 基準인 理論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여 —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하였으므로 사회주의체제는 이론이 제시한 거대한 틀 속에서 정치·경제 등 사회 제분야의 具體的 配置를 사전에 결정해야 했다. 이는 體制設計를 의미하며, 그것도 각 분야의 恣意的 행위가 제한된 정밀한 設計였다. 따라서 사

2) 이 논문에서는 사회와 국가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맑시즘을 참조 준거로 하는 한, 바람직한 사회상태가 반드시 국가일 수 없다. 오히려 맑스는 국가를 사회로 대치하려 노력한 이론가였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상태란 국가라는 억압기구의 철폐이후를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실천(Praxis)해가는 도정으로서의 사회주의 국가를 긍정한다면 사회와 국가를 잠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논의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회주의국가의 제반활동은 명확한 理論的 指向[3] 아래 잘 짜여진 體制設計(System Design)에 맞추어서 수행된다. 즉 사회주의국가의 모든 활동은 이론에서 도출된 일정한 政策目標와 구체적 현실에 따라 조절되는 政策手段의 규제아래서 수행되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變形과 異論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이 추구해온 사회주의는 私有財産의 撤廢를 통해 無階級·無搾取·無抑壓의 平等構造를 실현함으로써 人間의 解放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맑스는 經濟的 階級의 원인인 사유재산의 폐지가 인간의 감각과 인간적 특질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사유재산의 폐지 후에는 人間과 그 現實間에는 다시는 틈이 생기지 않으며, 인간에 의해 창조된 현실은 인간의 것이 되어 인간과는 인간적으로 연결된다.[4]

그러나 현실은 보다 복잡하다. 사회주의가 출발한 기존의 사회는 계급뿐만 아니라 성·인종·민족의 제 요소로 분리·대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旣存社會=階級社會의 變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민족 등의 문제와 함께 性差別의 문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성차별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언급되나, 대부분은 맑스 사후에 엥겔스가 저술한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에서 체계적으로 논술되어 있다.

맑스-엥겔스는 生命再生産과 生存手段의 生産이라는 性的 分業이, 역사

3) 여기서의 理論的 指向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實踐(Praxis)과 결부되어 있어 實踐的이고, 信念體系를 구축하므로 理念的인 지향이다. 이는 맑스가 "객관적 진리가 인간사상의 속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본데서 확인된다.
K. Marx, 『포이에르 바하에 관한 테제』, 정승현역(N. Rotenstreich), 청년 맑스의 철학(서울 : 미래사, 1985), p. 29참조.

4) 김태경역(K. Marx), 경제학 철학수고(서울 : 이론과 실천, 1985), pp. 84-96.

의 어느 일정단계에서 생존수단의 생산에서의 생산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性差別로 발전하였으며, 그 직접적 契機는 私有財産制度와 相續制度의 發生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性差別과 性的 抑壓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이 社會的 生産活動에 參與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이렇게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契約關係로 구성된 가정이 解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즉 맑스-엥겔스는 여성이 인간으로 해방되기 위한 出發點을 社會的 生産에의 여성의 參與에 두었으며, 그를 위해 여성을 속박시키는 가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6]

이러한 맑스-엥겔스의 인식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북한은 男女平等과 女性解放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질서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을 동원해 왔다. 즉 북한의 여성정책은 확고한 이론적 지향을 기초로 하면서 全社會的 Societal 조망아래 일관되게 수행되어 온 것이다.

북한은 정권수립과 함께 1946년 女盟 — 당시에는 北朝鮮 民主女性同盟 — 을 조직한 것을 시발로, "가정의 혁명화",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구호 아래 정치·경제·사회 제분야에 여성을 동원해 왔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생산활동에의 참여로 인해 발생되는 兒童養育과 家事의 二重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한 諸手段을 강구해 왔다.

여성의 社會的 動員에 초점을 둔 북한의 여성정책은 社會經濟的·政治文化的 맥락속에서 다소간에 변형되고 또한 왜곡되게 된다. 특히 비교적 성공적인 여성의 동원에도 불구하고 理念과 現實間의 乖離가 존재한다.

---

5) 김대웅역(F. Engels),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서울 : 아침, 1987) 참조. 이하의 논의에서는 이 책을 『기원』으로 칭한다.

6) 맑스-엥겔스는 가정이 어떤 형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원』에서 부분적으로 개인의 진정으로 자유로운 애정에 의한 일부일처의 결혼을 제시하였으나, 애정의 가변성에 비추어 볼 때 예상되는 가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개략적 흐름을 지닌 북한의 여성정책에 관해 본 연구가 갖는 관심은,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울러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라 북한의 여성정책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둘째, 북한의 여성정책은 각 시기별로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세째, 여성해방의 주요경로로 설정된 사회적 동원은 진정 여성해방을 가져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가 혹은 이론적 지향 자체에 한계가 있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에 기반하여 실제현상을 경험적이고 논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理論과 實踐, 理想과 現實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非論理的 批判 혹은 美化에 理論的으로 對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硏究對象으로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시행해온 女性 및 家族關聯 政策을 고찰할 것이다. 정책은 金日成教示나 演說, 法令이나 政務院 및 內閣 決定 등의 형식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들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추출할 수 있다.

硏究內容으로는 이들 政策表現을 맑스-엥겔스의 定式化된 이론에 비추어 妥當性을 검토함과 아울러 정책의 成敗를 사회경제적·정치문화적 요인의 고려하에 評價하고자 한다. 즉 매시기별 정책을 理念 — 맑스 — 엥겔스의 이론 — 과 現實 — 사회경제적·정치문화적 요인에 의한 변형 — 의 두가지 척도로 평가함을 內容範圍로 한다.

본 연구는 理念的 指向을 갖는 政策過程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變形되는가를 분석함을 중심과제로 하므로, 북한여성의 현재의 생활모습을

추적하지는 않는다. 즉 硏究의 中心은 북한의 女性政策에 있지 生活實態에 있지 않다.

또한 맑스-엥겔스의 이론체계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므로 家庭의 變化와 여성의 社會的 動員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사회적 생산에의 여성참여의 결과로서 획득된 지위향상과 관련되는 한도내에서만 검토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는 文獻分析에 의존하고,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에서 발행된 여성 및 가족관련 法規, 김일성·김정일의 敎示와 演說, 朝鮮勞動黨 黨大會 자료와 最高人民會議 資料 등으로, 북한발행의 公式資料를 중심으로 하며, 그밖에 이들을 분석한 남한 내의 分析資料도 논의의 과정에서 수용될 것이다.

Ⅱ. 社會主義的 女性政策

1. 性差別의 起源

맑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최초의 분업은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男女間의 分業이었다고 규정하였다.[1] 이를 발전시켜 엥겔스는

> 유물론적 견해에 따르면 역사에서 결정적 계기는 궁극적으로 직접적 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생존수단, 즉 의식주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 일정한 역사적 시대 및 일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조직은 이 두가지 종류의 생산에 의하여, 즉 하나는 노동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다른 하나는 가족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규정된다.[2]

는 인식아래, 목축이라는 거대한 社會的 分業 즉 勞動分業의 발생과 그로 인한 剩餘生産物의 축적 및 相續問題의 發生이 성적 분업을 性差別·性抑壓으로 변화시켰다고 보았다.

성적 분업은 二重的 요소를 띤다. 하나는 生活資料 生産에서의 성적 분업이고, 다른 하나는 生命再生産의 성적 분업이다.

생활자료 생산에서의 분업은, 여성은 주거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식량을 채집하거나 의류 제작 및 가사를 담당하고, 남성은 보다 먼 곳에서 식량을

---

1) K. Marx, 『독일 이데올로기』, 김대웅 역(F. Engels),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서울 : 아침, 1987), p. 73.

2) Ibid., p. 6.

채취하거나 수렵·어로를 통해 식량을 획득하는 것이다. 생명재생산에서의 분업은 여성이 출산의 부담을 지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부자유시기에 남성이 여성의 생활자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生活資料 生産様式의 변화는 勞動의 發展段階를 반영한다.[3] 이는 일반적으로 역사의 발전단계라 지칭되는 원시공산사회로부터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이어지는 것이다.

生命再生産의 發展段階는 家族의 發展段階를 반영한다. 엥겔스는 모간의 「古代社會」를 수용하여 原始血緣家族 consanguine family — 푸날루아家族 punalan family — 對偶婚家族 pairing family — 一夫一妻制家族 monogamous family 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발전단계를 설명한다. 즉 노동과 가족의 발전단계는 모두 성적분업을 포함하고 있다.[4]

---

3) 역사발전에 관한 맑스의 일반적 견해는 『자본론』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가족관계의 발전에 관한 그의 견해는 모간의 『고대사회』를 발췌하여 주를 단 그의 『민속학적 발췌본』에 나타나며, 이는 엥겔스가 『기원』에서 전개시킨 논의와 거의 일치한다.
엄명숙·강석란 역,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서울 : 중원문화, 1990) 참조.

4) 원시혈연가족은 군혼형태로서, 집단내의 모든 여성은 집단내의 모든 남성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는 近親姦에 대한 금기가 성립되지 않았다. 생활자료의 생산은 추로 채집된 식물류로서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해 여성이 보존·관리·배분하였다.
동등자·형제 등의 의미를 지닌 푸날루아란 칭호에서 따온 푸날루아 가족은 近親姦 금지가 생겨난 후 종족내에 족내혼과 족외혼의 두 규범이 작용하여 성립한다. 여기서는 A씨족의 모든 여성은 B씨족의 모든 남성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반면 B씨족의 모든 여성은 A씨족의 모든 남성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A, B 모두 한 종족에 속하며, 씨족내에는 엄격한 족외혼이, 부족내에는 엄격한 족내혼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생활은 집단 전체로 영위되고, 씨족의 우두머리가 식량 등을 분배한다. 씨족의 우두머리는 남성인 경우가 많으나 상속은 모계를 중심으로 하는 씨족상속이므로 여성중심적 질서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혼 가족은 푸날루아 가족의 발전상태이다. 여전히 군혼이지만 상대적으로 본부·본처에 해당하는 상대자가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 집단의 남성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몸을 허락해야 한다. 이는 중세까지도 초야권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 시기에 생산력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상속재산 문제가 대두된다.

인류의 역사는 오랫동안 노동의 낮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노동의 발전단계와 가족의 발전단계는 어느 일방의 압도적 우세가 없이 균형을 유지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이 야외에서의 노동과 비슷한 — 종종 보다 우월한 — 생산성을 기록하였으므로 가족제도는 그 단계의 사회적 생산에 일치하여 혈연가족 — 푸날루아가족의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부자관계의 불확정으로 인해 母系制가 유지되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는 여성의 억압이란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牧畜의 시작과 함께 상황은 변화한다. 상대적으로 父子關係가 確定可能해진 對偶婚 家族의 시기에 발생한 목축은 높은 생산성을 기록함으로써 剩餘生産物 — 相續財産 — 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때는 각자의 생산수단을 각자가 소유하고, 대우혼 관계가 소멸하게 될 때의 재산분배도 각자의 소유물을 나누어 찾아가는 식이었다. 당연히 남자는 목축을 담당하였었기 때문에 양과 기타 목축에 관계되는 생산수단을, 여자는 가사에 관계되는 생산수단을 가졌다. 그러나 모계제 씨족상속제도에서는 남자의 재산이 그의 어머니의 씨족에게 상속되어 부자 사이의 상속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父權制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서부터 古代 奴隷制 生産樣式과 階級分化가 발생하였다.

남성이 담당한 목축에서의 높은 생산성이 가사에서의 생산성을 압도함에 따라, 성적분업은 점차 생명재생산의 영역에서만 강화되고 노동에서의 성적분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되었다. 남성은 확실한 자신의 아이를 얻기 위해 여성을 격리할 필요를 느껴 여성을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배제하게 되고, 따라서 점차 여성은 남성에게 依存하며, 단순한 생명재생산의 道具化한다.

一夫一妻制 가족은 남편의 지배에 따른 것으로서 아버지의 血統이 확실한 아이를 낳자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부일처제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부계혈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성을 격리시켰고, 家族單位의 생산을 영위함에 따라 요구되는 더 많은 노동력을 위해 奴隷를 사용했다. 노예의 자손은 주인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주인은 여자노예의 출산

을 기꺼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에게 쇠퇴해진 性愛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도 여자노예는 동원되었다. 결국 사유재산에 기반한 일부일처제는 재산의 증대와 이 재산을 적법하고 확실한 자녀에게 이전시키려는 열망때문에 추진되어,[5] 남성에게는 貞操의 義務가 免除된 채 이어진다.

맑스-엥겔스는 私有財産制度에 기반한 一夫一妻制란 실상 개인의 애정 — 혹은 性愛 — 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家事奴隷를 安定的으로 유지하고 子孫을 얻기 위해, 여성은 생계를 위해 性과 勞動力을 제공하는 經濟的 契約을 바탕으로 하는, 즉 疎外된 商品 交換의 일 형태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6]

따라서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어, 남자는 일생을 두고 금전이나 기타 사회적 권력수단으로 여자를 사는 일이 없게 되고, 여자는 진정한 사랑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동기로도 결코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게 되며 경제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허락해 버리는 일이 없게 될 때[7] 진정한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리라 본다.

이로부터 엥겔스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은 여자가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어 사적인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한 불가능하며, 또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서 명백해진다. 여성의 해방은 그들이 사회적 규모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또 그들이 돌보아야 할 가사가 아주 적을 때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8]

---

5) K. Marx, 『민속학적 발췌본』, 엄명숙 • 강석란, op. cit., p. 26에서 재인용.
6)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시민적 결혼이란 사실상 아내의 공동소유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생산관계가 폐지되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여성의 공동소유, 즉 공식적 • 비공식적 매춘 또한 소멸한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고 엥겔스는 『기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7) 김대웅, op. cit., p. 91.
8) 김대웅, op. cit., p. 183.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된 이후, 社會的 所有의 시기에 도래할 일부일처제가 어떻게 안정성을 지닐 수 있는가, 또 家庭의 不安定이 초래할 사회적 제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이 수긍했듯이 인간의 애정이란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 애정에만 기반한 결혼 및 가족관계란 지극히 불안정할 것이다. — 이점에 관한 한 두 과학적 사회주의자는 관념적 도덕주의자가 되어 있다.

또한 엥겔스가 목축의 발생을 사유재산제도 및 성적 억압의 결정적 계기로 보는 것은 Orient적 생활양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계기가 어떠하건, 生活手段의 生産力 增大가 性的 抑壓을 가져온 것은 다른 연구자들의 논의에서도 주장되고 있다.[9]

또한 資本主義가 여성의 억압을 前提로 하지는 않는다 해도 家父長制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緊密한 關聯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10]

여하튼 이상의 개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바로는 社會主義가 指向하는 社會主義的 秩序란 이러하다.

먼저 私有財産制度는 廢止되며, 따라서 階級의 對立이 消滅한다.

계급이 소멸되고 인간은 商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性差別의 經濟的 根據도 소멸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양육으로 여성의 출산이 초래하는 生物的 不利点을 사회적으로 극복하고, 여성은 社會的 生産에 參與하여 자신의 생존을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 생존을 의존하지 않으므로 의식도 종속되지 않아 여성과 남성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해방되며 오로지 애정으로만 결합한다.

이러한 질서는 맑스 당시에도,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도 달

9) 김봉률역(C. Meillassoux), 자본주의와 가족제공동체 : 여성, 곡창, 자본(서울 : 까치, 1988) 참조.

10) 박영신 • 한상진 역(A. Gouldner), 비판사회학(서울 : 현상과 인식, 1983), p. 183.

따라서 맑스의 이론이 — 혹은 맑시즘이 — 과학적이라고 주장된 것은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인류사회가 발전해 왔다는 경제결정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은 다시 말해 원인이 존재한다면 결과는 자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맑시즘이 과학이라면 생산관계의 발전에 따라 자연히 이 세계는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되리라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의지와 투쟁, 실천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을 강조한 맑시즘은 과학인가 비판인가.

맑시즘은 과학의 요소와 批判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13]

비판으로서의 맑시즘은 인간의 意志와 闘爭을 강조하고 — voluntarism — 사회의 總體性 totality을 중시하며, 價値·槪念·意識·目的 등을 지향하여 혁명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러한 입장은 맑스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요구한 것, "객관적 진리가 인간사상의 속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Praxis)의 문제"[14]라고 한 것, 보다 확증적으로는 폭력혁명을 요구한 것 등에서 드러난다.

과학으로서의 맑시즘은 그의 經濟決定論을 주요 요소로 하여, 歷史發展段階說, 社會主義 革命의 必然性, 辨證法的 唯物論 등에서 선명히 드러나며, 이 입장에서는 폭력 혁명이나 노동자의 투쟁 조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의 모호한 성격은 사회주의로의 이행형태를 둘러싼 많은 대립과 반목을 야기시켰다. 과학으로서의 맑시즘을 믿는 사람들은 전략전술이나 의지보다는 經濟的 要件의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비판으로서의 맑시즘을 택한 사람들은 勞動者 組織, 前衛組織, 革命과 意志 등을 강조하는

---

13) 김홍명 역(A. Gouldner), 맑시즘 : 비판과 과학(서울 : 한벗, 1984) 참조.

14) K. Marx, 『포이에르 바하에 관한 테제』, 정승현 편역, 청년 맑스의 철학(서울 : 아침 새책, 1987), p. 85에서 재인용.

성되지 못한 가설적 질서이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가설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서, 이의 實現을 위해 — 혹은 그러한 言明아래 — 계획적으로 諸條件을 만들어 간다.

2. 社會主義로의 移行

원래 맑스는 사회란 대립된 세력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변동이 야기되는 동적 균형이며,[11] 이러한 사회변동은 진보의 역사로서 原始共産社會 — 古代奴隸社會 — 中世農奴社會 — 資本主義社會 — 社會主義社會로 인류는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역사관을 관류하는 것은 經濟決定論的 進化論이다. 맑스가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이라 칭하는 것은 生産樣式과 生産關係의 辨證法的 관계에서 歷史의 發展法則을 찾아내었다는 데 근거를 둔다.

과학적이란 무엇을 칭하는가?

과학철학은 이에 대해 ①論理的 logical ②一般的 general ③決定論的 deterministic ④簡潔 parsimonious ⑤特定的 specific ⑥檢證可能 empiriccally verifiable ⑦間主觀的 intersubjective ⑧修正加能 open to modification 등을 과학의 속성으로 열거하고 있다.[12]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학의 속성은 그것이 다루는 변수간의 관계가 인과적 관련 — 결정론적 — 을 지니고, 그 현상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는 어디서나 성립하며, 이러한 관계의 진술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론적이란 원인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因果關係를 의미하며, 사회과학의 경우 확률적 인과관계도 결정론적인 것이 된다.

---

11) 신용하 • 박명규 역(L. Coser), 사회사상사(서울 : 일지사, 1978), p. 73.

12) E. R. Babbie, 『Survey Research Methods』,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서울 : 박영사, 1976), pp. 12—15참조.

강력한 실천운동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혁명은 실천을 통해, 즉, 비판적 맑시즘의 意志決定性 Voluntarism, 불연속의 변화, 社會總體性을 추구하는 운동의 성격을 통해 달성되었다. 맑시즘의 현실화는 비판으로서 가능했고, 이는 전체적 맑시즘 구도에서는 왜곡을 — 즉 科學性의 損傷 — 의미했던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맑시즘을 국가적 단위로 최초로 현실화시킨 레닌은 "노동자는 언젠가는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목표가 동일한 수단에 의해 달성된다고 확언하는 것은 아니다"[15] 라고 한 맑스의 언급에서부터 "맑시즘은 극히 다양한 투쟁형태를 인정한다……그렇기 때문에 맑시즘은 어떠한 투쟁형태도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16] 는 논리를 도출해 내고서 소수 전위당에 의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후 레닌이 러시아의 경제발전 단계, 문화적 전통 등의 조건에 따라 변형시킨 사회주의로의 이행 형태 — 소비에트 사회주의 — 가 각국의 상황에 따른 변형 여지를 계속 유보하면서 사회주의 이행의 고전으로 작용하게 되며, 맑스 — 엥겔스 이론은 맑스 — 레닌이즘으로 지칭된다[17] 이후의 모든 사회주의 혁명은 소비에트 혁명의 변종이고, 소비에트적 경험이 구체적 조건에 적용되어 여러가지 형태로 반복된 것이다.[18]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의 소비에트적 이행형태는 前衛黨의 지도, 武裝蜂起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을 결정적 내용으로 한다.

---

15) K. Marx and Engels, 「Selected Works in the three Volumes」, Vol. 3, 김운영 편역, 사회주의 이행형태론(서울 : 아침 새책, 1988), p. 176에서 재인용.

16) V. Lenin, 「Collcted Works」, Vol. 4, Ibid., p. 176.

17) 맑시즘과 레닌이즘의 차이, 혹은 레닌식의 맑시즘 접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평가가 있어 왔다. 레닌식의 접근을 맑시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비판에서부터 비롯되며, 이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트로츠키 이후의 사회주의제국이다. 이에 관해서는 현대평론역(D. Rain), 레닌이즘 : 사회학적 해석(서울 : 청사, 1985) 참조.

18) 김운영, op. cit., p. 35.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낡은 사회관계의 파괴와 새로운 사회관계의 창조로서, 이 혁명적 과정은 급진적 파괴, 즉 무장봉기와 점진적 이행, 즉 개량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19] 그러나 소비에트적 이행형태는 대체로 혁명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치제도와 경제조직, 사회관계와 계급구조, 국가장치와 법률, 도덕과 풍속 이러한 모든 것이 지극히 단기적이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가차없이 파괴되고, 근본적으로 고쳤다.[20] 이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은 기존세력의 저항이 대단히 광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단 무력에 의해 기존권력을 파괴한 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독재가 채택된다. 레닌에 의해 정식화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진정한 인민권력이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실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압도적 대다수의 주인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몇세기 동안이나 인민을 억압해 온 극소수의 착취자에 대한 단호한 탄압"[21]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中樞는 黨이고, 社會階級的 기초는 勞動者와 農民의 聯合이다.[22] 즉 노동자와 농민을 당이 지도하며 모든 반대자를 철저히 억압하는 全體的 Totalitarian 정치형태이다.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

19) 맑시즘은 점진적인 이행이라는 의미의 개량은 기회주의적이라고 거부한다. 맑시즘의 개량은 어떤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비약적 발전 형태이고, 낡은 관계의 파괴와 새로운 관계의 창조, 어떤 질적인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인 상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Ibid., p. 34.

20) Ibid., p. 35.

21) Ibid., p. 37.

22) 원래의 맑시즘에서 보면 농민은 보수적이며 반동적 세력이다. 그러나 레닌은 농업국상태의 러시아와 절대다수의 소작농을 고려, 그들이 모두 토지를 소유하는 — 봉건적 대토지소유제의 몰락 — 상태만으로도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반동적이며 유토피아적이지만, 부르조아 민주화의 관점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라고 하여 농민을 혁명동맹세력에 포함시켰다. 현대평론, op. cit., pp. 53—57.

탄압을 분쇄한다. 이 독재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당은 프롤레타리아의 조직적 무기로서, 민중의 해방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상정된다.[23]

이렇게 당의 직접지도아래, 무력으로서 기존권력을 전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여 사회주의에로 이행한 소비에트 국가는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첫째 : 대중의 정치·행정 참여경로의 설치. 모든 국가권력기구에 대중참여가 보장되도록 장치되었다.

둘째 : 입법권과 집행권의 통일, 대의기구(입법기구)의 우위

세째 :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서 민주집중제의 채택. 이는 사회 모든 영역이 당의 계획과 통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질서를 확립했다.

결국 社會主義 移行形態의 모델로서의 소비에트 혁명은 黨의 指導, 反對者에 대한 단호한 彈壓과 抑壓, 모든 영역에 걸친 計劃的 指導와 統制를 수단으로 하여 無階級의 平等構造를 추구한 것이다. 이후 모든 사회주의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전체주의적 질서를 추구하게 된다.[24]

3. 社會主義的 女性政策 : 中·蘇의 經驗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맑스-엥겔스가 構想한 社會는 사유재산의 철폐로

---

23) Ibid., p. 100.

24) 이러한 전체주의적 질서를 추구한 것은 레닌이 맑스의 계급투쟁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 뒤르껭의 유기체론을 수용한 때문이다. 뒤르껭은 사회를 유기체로 파악, 전체가 부분에 선행한다고 보았다. 또 레닌은 루소의 일반의지를 맑스의 계급분석에 통합하여, 노동자계급의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이며, 그것은 당을 통해 표현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에 의해 창조될 것으로 보았다.
Ibid., pp. 102-106.

無階級•無抑壓•無搾取의 平等構造를 달성한 解放社會였다. 또한 사회주의적 질서를 — 기존질서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적 동원에 의존하는 抑壓的•全體主義的 方法 — 프롤레타리아 독재 — 이 불가피하게 선택되었다.

사유재산의 철폐는 부분적 변형이나 완강한 저항에 의해 지체될망정 확실히 정부의 의지에 의해 測定可能한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수립 이후 産業國有化를 10년 정도의 기간 내에 달성하고, 토지의 집단화는 그보다 조금더 지체되면서 달성하였다.

그러나 사회에 全面的인 平等構造를 實現시키는 것, 그래서 타인에게 종속되거나 억압되지 않게 하는 것은 경제적 계급의 철폐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계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性的•人種的•民族的 불평등이 있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 맑스 —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 우선 해결해야 했던 것은 性的 不平等이었다. 性的抑壓과 資本主義가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는 맑스—엥겔스의 지적이 아니더라 해도 전면적 평등구조의 실현에 인구의 반인 여성이 배제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을 평등구조속에 적절히 배치시키는 것과 그 과정은 지난한 사유재산의 철폐보다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여성에 관해서는 남성들의 —계급을 초월해서— 갖는 普遍的 觀念의 偏向性이 대두되었다. 또한 남녀의 불평등 혹은 성적인 착취는 가족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 가족은 쉽사리 교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더구나 가족은 社會存續의 基盤인 동시에 인간적 본능의 합법적 해결공간이었으며,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남성은 애정의 이름아래 여성이 자신을 받들어 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길러주고, 자신이 지칠때 돌아와 쉴수 있는 안식처만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더구나 농부가 땅을 요구하거나 노동자가 임금의 상승을 위해 투쟁한 것

과 달라서 여성들조차 모두가 평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利害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계급투쟁식의 방법을 兩性間의 鬪爭에 적용시켜 억압된 성의 해방을 도모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주의국가들은 다른 성격의 모순은 다른 성격의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女性問題를 意識改革과 社會的 生産에의 動員으로 해결하려 모색한다.[25]

우선 사회주의 국가는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성을 생산현장으로 동원했다.

> 여성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여성과 남성간의 진정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공공생산과 공공노동의 공공경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등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26]

이에 따라 소련과 중국은 여성을 計劃化된 國民經濟秩序에 맞추어 광범위하게 산업현장에 동원한다. 물론 이러한 생산에의 여성동원이 순수히 평등을 위한 노력이었다고만 평가되기는 어렵다. 소련은 국가수립과 함께 내전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후의 경제개혁 기간동안 勞動力의 動員이 긴요했었고, 중국 또한 국민당과의 기나긴 투쟁동안 여성의 원조를 필요로 했으며, 사회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封建的 遺習을 파괴해야 했던 바, 봉건적 억압의 가장 큰 희생자였던 여성의 지지와 동원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1928-32) 중반부터 산업노동자에 대한 충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은 1930년 말경에 도시지역에서 산업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931년부터 노동자의 조직적

---

25) 『혼인법시행을 위한 운동에 관한 중국 공산당중앙위 보고서』, 김미경 • 이연주 (E. Croll), 중국여성해방운동(서울 : 사계절, 1985) 참조.

26) Ibid., p. 268에서 재인용.

인 충원은 무엇보다도 집단화된 농민들의 계획적인 이주정책에 힘 입었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였다. 여성노동력의 비율은 현재 소련에서 대략 전산업노동력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은 이보다 낮다. 〈표1〉

〈표1〉 소련과 중국에서 勞動者·事務員中 女性比率(%)

연 도	소 련	연 도	중 국
1922	25	1949	7.5
1928	23	1952	11.7
1940	39	1955	13.0
1945	56	1956	13.5
1950	47	1958	15.4
1955	46	1959	18.8
1973	51		
1978	51		

출처 : 송두율, 소련과 중국 (서울 : 한길사, 1990), p. 36.

소련에서 産業勞動力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2년의 35%에서 1950년대부터는 약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중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 중국에서는 1959년에 전산업노동력의 18.8%가 여성노동력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소련은 물론 중국에서도 주로 이른바 "여성에 적합한" 산업분야, 예를들면 섬유산업·식료품공업 등에서 노동한다. 〈표2〉

소련 산업에서 여성의 勞動力 質의 평균수준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교해서 매우 낮다. 기업체에서 지도적이고 책임있는 직책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소련은 물론 중국에서도 여성의 수직적 이동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 4〉

소련의 산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체에서도 높은 직책에 여성이 오

르기는 아직도 쉽지 않으나 소비재공업, 섬유공업, 식료품공업과 같은, 비교적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산업분야에서는 기업내의 주요직책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는 소련과 중국 두나라의 산업여성들이 勞動者이면서 동시에 家庭主婦로서 이중의 부담을 지고, 게다가 이로 인한 아주 적은 자유시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5〉

〈표2〉 소련과 중국의 일부 産業分野에서 女性比率(%)

구 분	소 련		중 국
	1959	1970	
기계작업/기계제작	15	16	–
경 공 업	–	–	30(1960)
섬 유 공 업	85	85	73(1960)
제철, 철강업	–	–	15(1958)
식 료 품 공 업	65	77	–
인 쇄 공 업	70	72	–
철도(서비스노동)	–	–	50(1962)

출처:위의 책, p. 39.

〈표3〉 소련산업의 勞動力 質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율(%)

구 분	남 성 노 동 자	여 성 노 동 자
고 급 노 동 력	31	4
중 급 노 동 력	30	30
하 급 노 동 력	19	66

출처:위의 책, p. 40

〈표4〉 소련 산업내 主要 職責에서의 여성비율(%)

구 분	1963	1973
경영책임자	6	9
책임엔지니어	16	10
작업장 책임자 또는 대리책임자	12	16
중간급 관리자(공단, 사무실, 실험실)	20-22	26
엔지니어	38	49
책임관리원 또는 상급사무원	36	53
기술자 엔지니어-관리원, 회계관리원	65	78
계획원, 통계원	70	86
산업노동자	45	49

출처:위의 책, p. 40.

〈표5〉 소련과 중국의 남성 및 여성 勞動者의 時間豫算(평균근무일)

활 동 내 역	남 성 노 동 자				여 성 노 동 자			
	소 련		중 국		소 련		중 국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사회적 생산노동	6.2	25.83	5.7	29.58	5.7	23.8	6.9	28.75
생산노동과 관련된 활동(점심, 출퇴근 시간 등등)	1.4	5.83	0.8	3.33	1.2	5.0	0.9	3.75
가사노동	1.4	5.83	3.9	16.25	4.1	17.1	5.2	21.67
생리적 욕구충족	9.3	38.8	9.4	39.17	9.2	38.3	9.1	37.92
자유시간	4.9	20.41	2.5	10.42	3.0	12.5	1.7	7.08
노동과 관계없는 보행, 교통기관의 이 용	0.8	3.3	-	-	0.8	3.3	-	-
자녀돌보기	-	-	0.3	1.25	-	-	0.2	0.83
합 계	24	100.0	24	100.0	24	100.0	24	100.0

출처:위의 책, p. 41.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농촌에서도 나타난다. 농촌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勞動日數를 남성보다 적게 계산받았다. (표6)

소련과 중국에서의 여성의 知識人에로의 育成은 특수전문학교와 대학의 전체 재학생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표7) 이 여성

〈표6〉 중국의 지역별 男性, 女性 勞動日數 比較(1957)

구 분	총 노 동 력 (단위:%)		노동자 일인당 평균노동일수		총 노 동 일 (단위:%)	
지 역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서북부와 대몽고	39.9	60.1	80	170	25.5	75.5
동 북 부	34.7	65.3	60	185	14.5	85.5
중 부	44.2	55.8	84	195	25.4	74.6
남 부	45.7	54.3	133	222	33.2	66.8

출처:위의 책, p. 161.

〈표7〉 소련과 중국의 전문학교학생과 대학생중 여성의 비율(%)

소 련			중 국		
연 도	특수전문학교	대 학	연 도	특수전문학교	대 학
1927/28	38	28	1949	—	19.8
1940/41	54	58	1952	24.9	23.4
1950/51	51	53	1957	26.5	23.3
1960/61	47	43	1968	27.0	23.3
1970/71	54	49	1978	—	24.0
1977/78	55	51			

출처:위의 책, p. 195.

지식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은 그러나 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사 혹은 의료요원과 같은 이른바 "女性特殊職"들이다. 이것들은 "家庭主婦"의 연장선상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러 연구기관(대학, 공장경영과 과학원)에서 주로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 지식인 중 여성비율은 현재 소련에서 40%에 달한다〈표8〉

〈표8〉 소련과 중국의 知的 職業群에서 여성의 비율

구 분	소 련		중 국
	1959. 5	1970	
교 사			
대 학	38	43	20 (1956) 25. 2 (1980)
초등학교	73	72	51 (1960)
중등학교	89	83	18 (1958)
의 료 요 원			
의 사	31	33	35 (1960)

출처 : 위의 책, p. 197.

맑스-엥겔스와 레닌의 견해로는 생산현장에 여성이 참여하여, 經濟的 이유로 여성이 남성에 종속하지 않게 되면 一段階의 平等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이 산업현장에 동원되는 것만으로는 여성이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애초에도 고려되었듯이 생명 재생산이라는 性的 分業의 負擔을 生物的으로 여성이 진데서 나오는, 出産과 育兒에 따른 여성의 부자유와 그로 인한 직장에서의 낮은 성공율 때문이다. 당연히 맑스-엥겔스가 제시했듯이 아동의 社會的 養育이 진지하게 고려되었다. 託兒所의 設置와 普通敎育의 실시 및 母性保護를 위한 제반조치가 취해졌다.

託兒所 設置는 의도에 미치진 못했으나 각국가가 많은 배려를 기울였는데, 1960년 현재 도시지역 8세미만 어린이의 10%, 중국의 6%가 탁아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련의 경우 75—80%를 국가가 부담하고, 중국은 거의 전부 부모가 부담한다.[27]

妊娠과 出産의 有給休暇는 소련의 경우 출산 전후 각 56일이고 중국은 합쳐서 56일이다. 출산시엔 出産補助費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보조비는 정식직원에게만 지급된다.

중국은 인구정책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아동보조비가 없는데 반해서, 소련에선 1947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다. 아이 두명을 가진 여성은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20舊루블, 그리고 넷째 아이를 낳을 경우엔 65舊루블을 보조비로 받았다. 남편이 없는 여자인 경우 아이가 하나 있으면 매월 5루블, 두번째 아이는 7.50루블, 셋째 아이는 10루블의 보조비가 지급된다. "과학적으로 계산된 最低生活 基準"에 따라 가족1인당 월 수입이 50루블 미만인 영세민 계층의 경우에는 1947년부터 소련에서 해당가구의 아이 한명당 최고 12루블까지 매달 보조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만 8세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맑스—엥겔스가 사유재산 철폐와 여성의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 아동의 사회적 양육 이후에 확립되리라던 "진정한 애정에만 의거한" 일부일처제의 결혼은 확립되지 않았다. 그것은 기존의 관념에 따른 結•離婚의 不自由와 封建的 遺習에 따른 非公式的 一夫多妻制의 온존에 기인한다. 따라서 각국은 국가수립과 더불어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家族法 및 婚姻法을 제정하였다.

사회주의적 가족의 관념을 반영하는 대표적 법률인 소련의 소비에트 가족법은 세가지 基本的 關係를 摘示한다.[28]

---

27) 송두율, op. cit., pp. 42—44.

28) 고려대학교 가족법교실 편역, 소비에트가족법(서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p. 526.
이 소비에트 가족법은 1917년 이후 정령으로 규정되어온 가족법규를 1968년 재정비한 것이다.

첫째 婚姻關係; 혼인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經濟的 契約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진정한 自由意思와 相互尊敬 위에 기반한다.

둘째 配偶者關係; 배우자관계는 양성의 완전한 平等, 相互尊敬, 妻의 經濟的 獨立 위에 수립된다.

셋째 親子關係; 父母子息間의 관계는 물질적 기초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共産主義 建設者의 道德律 Moral Code of the Builders of Communism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義務 위에 바탕을 둔다.

이들 가족관계법규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은 단지 當事者의 同意와 年齡要件의 충족으로 가능하지만, 重婚, 近親婚, 精神的 無能力 등은 婚姻障碍事由가 되었다.

이에서도 드러나듯이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국가의 家族·婚姻法은 자유결혼·자유이혼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더욱 심하였지만 소련에서도 離婚의 자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이혼은 가족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에 대응, "이혼의 자유는 가족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사회에서만 가능한 민주적이고, 인류평등주의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가족을 건설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적으로는 가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면서[29] 이혼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7—1944년까지의 이혼의 자유허용 이후 1944—1968년까지는 이혼이 엄격히 규제되었다가 1968년 소비에트가족법 제정이후 다시 이혼자유가 강화되었다.[30]

---

29) Ibid., p. 83.

30) Ibid., p. 83.
이렇게 이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 것은 사회주의적 가족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맑스—엥겔스가 말한 "인간적 애정에만 기초한" 가족이란 부부간의 성애가 쇠퇴할 때마다 이혼하는 사태를 이론상 막을 수 없다. 이혼의 범람은 가족의 해체를 뜻하는데, 가족을 자본주의의 생산단위로만 파악한다면 그 해체가 요구되지만, 사회의 기초단위로 본다면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때문에 명확한 해결이 없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혼허용 — 이혼규제 — 규제완화를 반복했다.

중국의 경우 자유결혼과 자유이혼, 강제결혼 금지, 양성평등을 골자로 한 혼인법이 1950년 제정되었으나, 이혼의 자유와 再婚許容에 대한 극심한 반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각종 캠페인이 전개되고 부녀연합등 조직까지 동원되었다.[31]

이렇게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強制結婚·重婚이 금지되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法制化되었으나, 여성의 二重負擔은 소멸되지 않았다. 가사와 직업의 병행은 때로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고, 중국에서처럼 여성의 再婚에 대한 慣習的 制限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법제상으로라도 가정에서 여성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은 그나마 사회주의국가의 강제적 권력에 의존한 것들이다.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 각국가는 가사노동분담, 育兒의 社會化 때로는 衣食住의 集團化까지 시도하였으나 크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여성과 남성의 意識改革을 위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全體的 動員이 가능한 계획체제였으므로 이들 교육은 그 양에 있어서는 눈부시게 전개되었으나, 그 정확한 성과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들 제 정책의 결과 사회주의국가의 여성의 평등이 실제로 달성되었는가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우선 사회적 노동에 동원된 여성들의 직업이 남성보다 대체로 非熟練·非專門·單純勞動에 치중되어 있어 同一職種 同一賃金이 실효를 거둔다 해도 구조적으로 여성의 경제력은 남성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보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높은 가사·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지고 있다. 탁아소 등도 완전히 여성을 育兒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여성의 낮은 경쟁력은 여성의 평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맑스-레닌의 社會主義體制 構想과 中·蘇의 建設 經驗

31) 김미경·이연주, op. cit., pp. 251-291.

을 통해서 社會主義的 女性政策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의 社會的 動員; 국민경제계획에 따라 여성들을 생산현장에 적극 동원한다. 이를 위해 동일직종 동일임금을 채택하였으나 농촌의 경우 노동일수의 계산에서, 도시의 경우 직책 중요성에서 性差別의 여지가 남는다.

둘째, 아동의 社會的 養育과 母性保護; 여성의 동원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탁아소 설치등 아동의 사회적 양육과 출산보조금, 아동보조금 및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 등의 모성보호조치가 취해진다.

셋째, 家族法·婚姻法制定; 兩性平等의 기초위에 가족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가족법·혼인법을 제정, 자유결혼·자유이혼·재혼 등을 허용한다.

넷째, 意識改革 및 女性團體組織; 성에 대한 固定的 觀念을 타파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여성의 역할을 재규정하도록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제도화·정규화 한다.

그리고 이들 조치는 당의 지도와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強壓的 政治秩序 및 計劃經濟秩序를 통해 實行力이 담보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Ⅲ. 北韓의 社會主義 移行段階

1. 北韓 社會의 性格과 社會主義 移行段階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은 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노선이나 정책에서도 양자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社會主義 移行 이전 북한 사회의 성격에 있다.

맑스-레닌이 사회주의 이행 투쟁에서 과도기적 프롤레타리아 독재시기를 설정한 이유는 ①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革命的 轉化의 시기인 過度期가 불가피하며, ②이 과도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누가 누구를"이라는 격렬한 階級鬪爭의 時期가 될 수 밖에 없고, ③따라서 이 시기의 국가는 그것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본질은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독재 이외에는 없다고 본 때문이다.[1]

이 맑스-레닌의 과도기는 발달한 資本主義 社會를 前提로 하여 단일한 共有制에 기초한 無階級 社會主義에로의 移行過程上 鬪爭裝置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맑스가 상정한 발전한 자본주의국가로부터도 아니요, 레닌이 소비에트를 건설한 역사적 배경인 자본주의 성숙기 속의 취약한 고리부문으로부터도 아닌, 前資本主義的·半封建的 社會, 더구나 일제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던 植民地·半封建 社會로부터 곧장 사회주의에로 이행해야 했다.

레닌이 농업국인 러시아를 사회주의화 하는 과정에서 당시 혁명의 성격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우선 실현시키는 2段階革命으로 규정한 세력과, 사회주의를 향한 直接革命으로 규정한 세력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 갈등은 맑

1) 김한민역(고승효저),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연구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청사 1988), p. 15.

스의 고전적 전제인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곳에서의 사회주의 이행 단계를 둘러싼 理論的·實踐的 戰略 鬪爭이었다. 여기서 레닌은 맑시즘을 하나의 일반적 접근방법으로 받아들여 — 비판으로서의 맑시즘 — 프롤레타리아독재로서 사회주의에로 곧장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만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세계적 고리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식민지 사회가 아니었다는 상이점을 지적, 식민지 반봉건사회인 북한은 곧장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도 없고, 노동계급에 의해 영도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북한의 공식적 자료에서는 1930년대에 이미 김일성이 한반도 사회의 성격으로 미루어 북한에 곧장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들어설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 이전단계로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하기 위한 「인민민주주의독재시기」를 설정하였다 한다.

人民民主主義獨裁政權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제국주의적·봉건적 질서파괴와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인민정권이다.

이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의 역사적 첫 형태로 북한이 제시하는 것은 1930년 6월 카륜에서 김일성이 수립했다는 人民革命政府를 든다.

김일성은 1930. 6. 30, 카륜에서의 共青 및 反帝青年同盟 指導幹部會議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통해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하는 광범한 人民大衆의 統一戰線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 것을 밝혔다.[2]

여기서의 勞農同盟은 레닌이 빈농층을 포섭한 것과도 달리 빈농·소작농뿐 아니라 反日的 中農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노농동맹이며, 勞動階級에 영도되지만 革命 主力軍 자체는 勞農同盟軍으로 편성되는 것이다.[3]

---

2) 한석봉·심형일,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3(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32.

3) Ibid., p. 34.

인민정권 수립을 위해 김일성이 내세웠다는 人民革命政府 政綱은[4] 反帝國主義 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정권은 각 유격구별로 설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1936년 반일민족통일전선으로 새롭게 조직되는 祖國光復會에 의해 대치되는데, 祖國光復會 10大綱領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의 반제반봉건혁명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준다.

祖國光復會 10大 綱領[5]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

4) 인민혁명정부의 정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민혁명정부는 일본제국주의를 포함한 모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괴뢰(만주국)을 전복하고 조중인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인민혁명정부통제구역내에 있는 모든 로동자, 농민, 유격대병사, 지휘관 및 학생, 상인 기타 반일, 반만, 반제 대중 및 그들의 가족은 남녀, 종족, 종교, 신앙의 차별없이 다같이 혁명정부의 공민으로서 평등권을 가지며 16세이상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매국적 민족반역자, 일본제국주의 및 괴뢰(만주국)의 주구배 및 반혁명분자들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또 정치상 자유가 없다.
1. 일본 및 모든 제국주의와 매국노의 은행, 철도, 광산, 기업소, 토지 및 기타 재산을 몰수하여 반일군비로 충당하며 일부분은 빈곤한 인민들에게 분배한다.
1.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피압박민족과의 공동전선을 결성한다.
1. 인민의 무장으로 반만 항일한다.
1. 가렴잡세를 폐지하고 통일누진세제를 실시한다.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독서 및 파업의 장유를 보장한다.
1.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며 실업자 및 재민을 구제한다.
1. 소작농민들에게 2, 8제 소작제를 실시한다.
1.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확립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서 문고) Ibid., p. 47 참조.

5) Ibid., pp. 50—5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27—128.

2. 재만 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만주국)들을 전복하고 중국령토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행할 것.
3.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 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 것.
4.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
5.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 것.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여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7.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
8.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 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 것.
9. 8시간로동제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 것.
10.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

해방이후 김일성은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북한의 당면과제가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이라고 밝히

고, 이를 위한 행동강령을 선언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1930년대의 인민혁명정부강령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맑스ㅡ레닌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하는 투쟁의 단계를 거칠 수 밖에 없고, 그 과도기의 정권은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뿐이라고 정식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주의단계의 독립국이 아니라 식민지 반봉건사회였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들어설 수 없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들어서기 위한 基盤造成이 필요하며, 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過度期의 過度期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할 역사적 과업을 진다[6]

그런데 이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과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은 인민을 유일적으로 영도할 혁명적 조직으로서의 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위 두 투쟁정권은 노동계급의 부르조아에 대한 독재이며, 독재의 중심은 당이다. 때문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시기에 당을 조직·강화하여, 당에 의해 영도되는 독재정권을 통해 혁명과업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이 결성된 것은 1945. 10. 10,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설치를 시발로 한다.[7]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서울

---

6) 소련과 북한의 과도기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은 차이가 있다. 소련의 과도기는 자본주의시기로부터 생산단위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는, 즉 다수 Uklad시기까지 임에 반해 북한의 과도기는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장악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사회주의·무계급사회까지의 단계이다.
또 소련은 과도기가 끝나면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종식된다고 규정하나, 북한은 과도기가 끝난 후에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견지되어야 하고, 일국 혹은 일부의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더라고 전세계에 사회주의의 최종승리가 달성되지 않는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에 관해서는 김한민, op. cit, pp. 15ㅡ26 참조.

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715.

의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1946. 4, 북조선공산당으로 분립을 선언하고, 동년 8.28—30, 중국연안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하게 된다.

북조선노동당은 1948. 8, 인민공화국 정권수립을 위해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1949. 6. 30, 1국1당 원칙에 따라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북조선노동당의 창립당시부터 조선노동당 창립까지의 黨의 指導理念은 맑스—레닌주의이며 당면목표는 통일정부 수립이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3차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4차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항일 혁명전통, 5차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 6차대회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지도이념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당규약에 규정된 지도이념의 발전은 김일성 우상화 단계의 반영을 의미할 뿐이고,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이었다. 즉 노동당은 김일성이 맑스—레닌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그들의 이념을 계승했다고 말하지 않을 뿐, 기본적으로는 맑스—레닌에 의해 定式化된 공산사회의 실현을 궁극목표로 삼고 있었다.

김일성 자신 귀국후의 연설에서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8],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인민정권의 역할로 규정해 온 것이 노동당의 성격을 반증한다.

여하튼 북한의 제정권은 노동당의 중심적 역할아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할 것이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에 의해서 추진되며, 전세계에 고도의 공산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

8) 김일성 저작집 1, pp. 339—345.

〈지도이념 및 목표의 변화과정〉

규 약	이 념 전 통	당 면 목 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46. 8)	맑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북조선노동당 2차대회 (48. 3)	맑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남북노동당 합당대회 (49. 6)	맑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3차당대회(56. 4)	맑스·레닌주의+조선인민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수립(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한반도)
4차당대회(61. 9)	맑스·레닌주의+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한반도)
5차당대회(70. 11)	맑스·레닌주의+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 승리보장(대내) •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한반도)
6차당대회(80. 10)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 승리(대내) •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한반도)

출처:국토통일원, 북한개요(서울:국토통일원, 1983), p. 27

2. 人民民主主義獨裁政權의 成立과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

북한은 제일 먼저 人民民主主義獨裁政權으로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성립시킨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5. 8. 24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8. 27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등, 아래로부터 각 지방인민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구성되는데, 1945. 10. 8,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의 주재하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열리고 1945. 10. 28,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발족되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후 1946. 2. 8,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北韓의 中央行政機關으로 성립된 것이다.

북한은 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위)를 두고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9]고 평가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반을 닦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 출발한 것이므로, 임시위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게 된다. 김일성은 이러한 임시위의 활동목표를 1946. 3. 23의 방송연설을 통해 20개조정강으로 요약 제시하였다.[10]

20個條 政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當面課題를 제시한 것으로,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 공민평등, 언론·집회·출판·신앙의 자유, 대기업소·운수기관·은행·광산·산림의 국유화, 소작제 철폐, 생필품의 가격지정제실시, 조세제도 확립, 노동법령제정, 의무교육제 실시, 문화·과학·예술 창달, 인테리 양성 등을 "당면한 기본욕구"로 규정하고 있다.

9) 한석봉·심형일, op. cit., p. 89.
10)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25—127.

이를 위해 임시위는 土地改革(1946. 3. 5), 産業國有化(1946. 8. 19), 勞動法制定(1946. 6. 24), 男女平等權 法令 發布(1946. 7. 30), 裁判制度 確立(1946. 3. 6),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 결성(1946. 7. 22),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의 실시(1945. 11. 25) 등을 추진하였다.

1946. 3. 5 발표된 土地改革法令은 일본 및 일본인의 소유지, 친일조선인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소유지로 하였고, 5정보이상의 조선인 지주소유지, 자경치 않고 소작주는 지주소유지, 5정보이상 성당·승원·기타 종교단체 소유지는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여키로 하였으며, 이 처리는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일임되었다.

이 토지개혁으로 分與받은 땅은 팔거나 저당하거나 소작주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력으로 경작할 수 없을 때 국가에 도로 반납하게 하여, "농촌에서 자본주의 부활의 길을 막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였다.[11]

이어서 1946. 6. 24,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공포, 8시간 노동제, 有害勞動의 7시간 노동제, 14—16세의 미성년자 6시간 노동제, 14세미만 노동금지, 보수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노동부녀·사무원의 출산 전후 77일간의 휴가, 乳兒가 딸린 부녀의 授乳時間 보장, 부녀의 야간노동 금지, 사회보험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7. 30,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발표, 男女平等을 법제화 한다.

다음으로 1946. 8. 10, 임시위는 産業國有化를 시행하였다. 이는 20개조정강에서 제시된 바 대로 일본과 일본 법인 및 사인 소유 또는 민족반역자 소유의 모든 대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사업·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 국유화한 것이다. 이로써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11) 한석봉·심형일, op. cit., p. 97.
그러나 실상 이 단계는 자본주의 부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예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시 농촌구조로서는 더 타당하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의 논리에도 더 적합할 것이다.

달성되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 시키는 계기가 이루어진다.[12]

이와 함께 김일성은 임시위에의 全 社會的 幇助體系를 위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그에 참가하는 각 계급과 계층들의 공동협의 기관이 필요"[13] 하였기 때문에, 1946. 7. 22,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이 통일전선에는 이미 결성된 諸社會團體가 網羅되는데, 職業同盟 35만, 農民同盟 180여만, 民主靑年同盟 100만, 女性同盟 60만, 藝術聯盟 1만여 맹원이 포함된다.[14]

여기서 직업동맹 35만에 비해 농민동맹 180여만의 수치가 바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라는 과도기를 위한 과도기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북한의 계급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 통일전선을 통해 각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 인민정권의 대민침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들 제반개혁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46. 10. 29, "국가규율을 강화하며 북조선 중앙은행을 창설할데 대하여" 제하의 연설을 통해 기강확립을 위한 사상교육을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建國思想 總動員運動으로, 여기서는 무엇보다 국가규율 강화, 건국정신과 봉사성이 강조되었다.

이들 제개혁이 진척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전제조건"[15]이 마련되었다고 보고서 임시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의 북조선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

12) Ibid., p. 97.
13) Ibid., p. 100. 여기서의 통일은 남북관계의 동일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14) Ibid., p. 100
15) Ibid., p. 95.

이상에서 살펴본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인 임시위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은 반봉건 상태의 북한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 곧장 사회주의적 제도를 移植시키는 압축혁명을 모색한다. 이는 압도적 다수인 농촌인구, 노동자 계급의 낮은 의식, 봉건적 예속관계하의 사회질서 등을 일거에 변화시키기 위해 법제에서부터 먼저 諸階級의 基盤을 파괴 혹은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뜻한다. 북한은 토지개혁·산업국유화로 강제에 의한 사회구조개편을 어느정도 달성, 사회주의적 제도수립의 단초를 열었다.

둘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一次 目標는 植民地的 秩序의 改編으로 일본 및 친일관료들로부터 국가통치권을 박탈하고, 사회저변의 식민지적 경제·사회·문화 유산을 척결한다. 이는 일제패망과 소련군의 주둔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진행되었다.

셋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二次 目標는 封建秩序의 打破이다. 토지개혁으로 지주-소작의 예속관계를 타파한데 이어 노동법령·남녀평등권 법령에서는 가정에 예속되고 남존여비의 전통적 관습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낮은 지위를 점한 여성들에게 직장과 사회에서 일정한 평등을 약속하고, 경제적 계급으로 노동자를 결속시킴으로써 인격적 예속관계의 봉건질서를 타파하였다.

넷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三次 目標는 民主主義의 確立이다. 물론 여기서의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독재, 나아가 프롤레타리아독재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일성이 1945. 10. 3, "진보적 민주주의"의 특징을 밝히는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적 자유는 반드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야 한다"[16]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선언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16) 김일성,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pp. 293-294.

다섯째, 그러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은 결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과 동일시 될 수 없는, 社會主義 途上의 革命이다. 따라서 독재의 유형을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부르조아독재로 二分한다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변형으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전제조건 형성기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로 본다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단계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북한이라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맞추어 변형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완료되고 프롤레타리아독재로 이행되어야 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단계이므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면 곧장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46년, 1년간 급속한 제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거의 한달에 한건 이상의 법령·규정을 제정·공포하고 민주청년동맹·여맹등을 결성하였다.

그러면서 1946. 8. 29, 北朝鮮勞動黨을 창립,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담당할 조직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 당의 결정을 사회 각 부문에 침투시킬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치가 완료되자 북한은 1946, 11월부터 각 지방별로 人民委員會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3. 프롤레타리아독재의 實施

1946. 11. 3, 북한 전역에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11. 8, 3, 459명의 人民委員을 선출하였다.[17]

---

17) 각 지역별 인민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평남 561명, 평북 744명, 함남 613명, 함북 375명,
황해 658명, 강원 467명, 평양 41명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 200.

이 인민위원회의 人的構成은[18]

노동자	510명,	14.7%
농 민	1,256명,	36.4%
사무원	1,056명,	30.5%
인테리	311명,	9.0%
상 인	145명,	4.2%
기업가	73명,	2.1%
종교인	94명,	2.7%
전지주	14명,	0.4%

등으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서도 노동자에 비해 농민이 현격한 우세를 보이고, 사무원을 포함해서야 농민보다 근로자계층이 다수가 된다.

이후 김일성은 1946.11.25, 임시위 제3차 확대회의에서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의 당면과업"제하의 연설을 통해 향후의 人民委員會의 課業으로[19]

첫째, 인민위원회의 강화와 관료주의적 작풍의 해소

둘째,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해 기강확립

셋째, 농업현물세제의 성공적 완수로 식량정책 실현

넷째, 산업·운수의 복구발전

다섯째, 토지개혁의 성과를 농업생산성향상으로 연결

여섯째,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국가재정정책 확립

여덟째, 국제적 친선협조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추진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

18) 한석봉·심형일, op. cit., pp. 111-112.

19) 김일성 저작집 2, pp. 542-560.

이어서 1947. 2. 17—2. 19, 사흘간 각도·시·군 인민위원들과 각 정당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 237명으로 北朝鮮人民會議를 구성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2.21—22 이틀간의 1차회의에서 행정기구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最初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다.[20]

이 북조선인민위원회(이하 인민위)를 출발로, 북한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단계가 전개된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독재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견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현재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시기에 해당한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인 인민위는 김일성이 제시한 인민위원의 당면과업 수행과 함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추진한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사회주의에의 과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후 북한에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와 소상품 경제형태·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남아 있었다.[21] 이 소상품 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를 완전히 해소하여 全人民的 所有·協同的 所有의 소유관계로 經濟形態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주의혁명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당면과제였다.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봉건유습과 봉건적 가족관계가 남아있었고, 일반주민의 의식을 가족유대를 중시하여 사회적으로 집단주의 정신이나 봉사정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외부환경으로는 미·소 공동위의 결렬에 이어 1947. UN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와 선거감시 UN한국임시위원단 설치가 결정되자 정권형태를

---

20)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p. 201.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총 22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북조선로동당 16명, 조선민주당 2명, 천도교청우당 2명, 무소속 2명의 구성비를 보였다.

21)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략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85.

국가적 형태로 선언할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인민위는 김일성의 "인민위원의 당면과업"[22]에서 제시된 8가지 당면과업 수행과 함께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서두르게 된다.

먼저 인민위는 당시의 낮은 경제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사회주의적 경제형태 확대를 목표로 人民經濟計劃을 집행한다.

김일성은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23] 자립적 민족경제를 이룬다는 것은 나라의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24] 고 하여 종합적 경제체제를 향한 경제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이 북한 최초의 人民經濟計劃이다.[25]

이 경제계획은 산업국유화와 국영화의 강화, 중요공업·철도운수·체신·대외무역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계획적 관리, 국영부문의 지도적 역할 강화, 국영부문·협동농장부문, 개인경리부문의 결합을 꾀한다.[26]

이 경제계획의 결과 1947년 공업생산은 1946년 대비 192%, 알곡생산은 118.6%로 증가되었고[27] 국영경제의 두드러진 신장과 수공업자·영세어민들의 결집을 달성하여 社會主義的 經濟形態의 比重을 높였다.[28]

이어서 북한은 경제·정권과 함께 국가의 필수적 요건인 武力의 확보를 위해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인민군은 해방이후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

22) 제3장 제3절 참조.
23)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p. 124.
24) 김일성저작집 2, p. 398.
25) 이 인민경제계획은 임시위에서 수립되어 1947. 2,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26) 김일성저작선집 1, p. 218.
27) 조선로동당 략사, p. 294.
28) Ibid., p. 298.

교, 보안간부훈련소를 설치하고 많은 군사간부를 육성한 것을 토대로 하여 1948. 2. 8.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되어 발족한 것이다.[29]

이렇게 정치·경제·군사분야에서 사회주의적 단독국가로서의 토대가 마련되자 김일성은 국가의 헌법적 기초마련에 착수, 1947. 11. 18—19의 인민위 제3차 회의에서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조직하였다.[30]

이어 남한에 제헌의회가 수립되자 1948. 4. 28—29. 헌법을 완성하여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통과, 이 헌법에 따라 1948.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1948. 9.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정강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전시킨 것으로 공화국 정부의 계급적 성격과 투쟁목적, 과업을 뚜렷이 밝혀 이로부터 본격적인 프롤레타리아독재 시기가 전개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위 성립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발표까지를 북한의 과도기로 보아야 한다. 이 기간동안 북한에서는 임시위에서 수행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마무리와 함께 殘餘 資本主義的 所有關係를 淸算하고 社會主義的 秩序를 定着시켰다.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은 북한이 완전한 社會主義·無階級社會에 들어섰다고 선언하였으며, 그 무렵에는 이미 농업의 집단화·기업의 국유화가 완료되어 본래적 經濟的 意味의 階級은 소멸한 후이기도 했다. 과도기 중간에 전쟁과 전후 복구기를 거치면서 북한사회의 재편은 급속하게 이루어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 종료 후에도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전 세계적 범위의 공산주의가 완성되기까지 독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김일성의 논리에 따라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에도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古典的 定義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

29) 한석봉·심형일, op. cit., p. 127.

30) 현재 북한은 남한이 단독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데 대응하여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선전하나, 이미 헌법제정초안이 1947년에 제시되고 있다.

의사회로의 과도기에 전개될 제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승리와 사회주의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또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고 계급대립의 존립조건, 계급일반의 존립조건을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롤레타리아의 政治的 支配이다[31] 또한 레닌이 지적했듯이 搾取者의 反抗을 鎭壓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한 다음 광대한 주민대중, 즉 농민·半부르조아·半프롤레타리아를 지도하기 위해서[32] 필요하다. 그러므로 계급이 소멸됨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들 고전적 입장을 전세계의 동시적 사회주의화 혹은 공산주의화를 전제로 했을때 타당하다고 보고,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과도기를 분리한 위에 社會主義制度 確立以後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必然性을 강조한다.

이때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계급이 소멸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은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2요새 점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김일성은,

>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 하나는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요새를 점령할 수도 없고 공산주의 사회를 완전히 건설할 수도 없다.[33]

31) K. Marx—F. Engels, 『공산당선언』, 김한민, op. cit., p. 27에서 재인용
32) V. Lenin, 『국가와 혁명』, 감한민, Ibid., p. 27.
3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9—276.

고 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사회주의제도 수립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맑스-레닌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합법칙성을 선언했다. 이때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신하게 될 미래 공산주의사회를 각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되는 하나의 결합사회로서 이해했다. 그리고 이 고도한 단계에서는 개인이 분업에 노예처럼 종속하지 않게되고 그와 함께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對立이 消滅하며, 노동이 살아가기 위한 手段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제1의 生活欲求로 되며 개인의 전면적 발전에 따라 생산력도 증대하고 협동적 부의 원천이 한층 풍부하게 되어, "각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각 사람은 그 필요에 따라"라는 준칙이 실현된다고 간주하였다.[34]

미래의 共産主義 社會는 단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의 전성원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물질적·정신적·사상적으로도 진실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며 勞動階級의 窮極目標는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착취계급의 타파와 계급적 억압 및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혁명의 제1과제·요구에 불과하고, 그러한 과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사회의 전성원이 진실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과 사회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과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다.[35] 이것이 사회주의제도 확립이후에도 북한에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현재의 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앞에 둔 북한에서 인민위 수립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특징과 방향은 아래와 같다.

---

34) 김한민, op. cit., pp. 15-42.
35) 김한민, op. cit., pp. 49-51.

첫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兩大目標는 思想的 要塞와 物質的 要塞의 占領이다. 여기서 물질적 요새의 점령은 생산관계의 전면적 사회주의화와 고도의 생산성을 의미하고, 사상적 요새의 점령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을 지향한다. 이들 요새는 현실적인 장애를 암시하고 있고 이의 점령은 3대혁명(사상·문화·기술혁명)으로 달성된다.

둘째,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黨的 指導 강화, 生産手段의 全人民的 所有와 社會的 所有의 確立, 農業의 集團化, 國家經濟의 計劃化, 生産性 向上, 技術革命 등을 추진한다.

셋째, 사상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 思想·文化革命推進, 教育의 社會化, 家族制度 改編 등을 추진한다.

사상혁명은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당과 지도자에 대한 服從·獻身·奉仕를 강조한다. 문화혁명은 모든 인간의 가슴속에는 라파엘이 있다는 맑스-엥겔스의 논리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문화적 자질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학예술은 사상투쟁의 위력한 도구라는 레닌의 논리에 따라 문학예술을 思想戰의 前衛로 개편하는 것이다.

教育의 社會化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적 도덕과 품성을 배양하고 성인의 사상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양육, 전반적 무상교육, 성인재교육의 지속적 실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家族構造改編은 봉건적 관습에 따른 호주제도를 혁파하고 부부-자녀구조를 개편하며, 가족간 유대를 공산주의적 도덕에 일치하게끔 조정코자 한다.

넷째, 이러한 북한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인민민주주의독재로 식민지·반봉건사회를 극복한 위에서 북한에 사회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高度의 共産主義社會를 實現시킴을 목표로 하며,[36] 전세계의 공산화

36) 여기서는 생산수산의 공유화·무계급사회에 도달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주의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세계적 단위에서 사회·경제·문화 제반분야에 공산주의적 도덕과 질서가 정착되는 "높은단계의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완성까지는 현실적 적들과 지속적으로 투쟁하기 위한 투쟁장치이다. 즉, 이것은 항상 현실의 투쟁대상을 설정하고 있고, 따라서 현실의 적이 소멸되는 단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다섯째, 북한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의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제도 완성 후의 프롤레타리아독재로 二分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 완성 전을 전기, 완성 후부터 공산사회 완성까지를 후기 프롤레타리아독재로 잠정적으로 부를 수 있겠다. 북한의 논리를 수용하면 1972년까지가 전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따라서 북한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맑스-레닌의 정식화에 따른 공산주의적 도덕과 질서 — 완전한 平等構造의 確立과 人間解放 — 를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변형시키는 투쟁과정에서의 政策·戰略 및 手段의 動員을 總稱한다.

그러므로 인민위 수립이후 지금까지의 북한의 제반정책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 구현이라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면서 사상·물질 양대요새의 점령을 위해 각 부문을 의식적으로 조정·동원해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여성정책도 이러한 전체구조속의 한 부문으로 존재하며, 1930년 인민혁명정부 정강 이후의 제강령을 토대로 구체화 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4. 女性政策의 基本方向

북한은 1930년대 김일성이 만주에서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하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기본방향을 밝혔다고 하면서 북한 여성정책의 출발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 김일성의 제정강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 입장에 의할 때, 김일성은 1930년대 인민혁명정부정강에서

부터 男女平等을 定式化하였으며,[37] 조국광복회 10대정강에서는 보다 명백히 남녀평등뿐 아니라 여성인격 존중과 婦女의 社會上 待遇를 提高하도록 선언, 여성해방의 방향을 밝혔다.[38]

이렇게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에 여성의 평등과 해방이 선언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1945. 8월의 김일성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45. 8. 20. 김일성은 평양에서의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 우리나라 전체 사회성원의 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혁명력량의 확대강화하고 부강한 새조국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부녀사업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근로녀성들을 광범히 망라할 녀성동맹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
> 우리나라 녀성들은 일제의 중세기적인 식민통치와 봉건적 질곡속에서 이중삼중의 천대와 압박을 받아왔으므로 혁명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
>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의 우수한 근로녀성들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영예를 위하여,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남성들보다 못지않게 잘 싸워왔습니다.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시련속에서 단련된 녀성혁명가들은 손에 총을 잡고 백설이 뒤덮인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총칼이 숲을 이룬 적진속에서도, 중세기적 고문과 단두대에서도 조금도 굴

37) 인민혁명정강 중 두번째조항, "인민혁명정부 통제구역내의 모든……가족은 남녀·종족·종교, 신앙의 차별없이 다 같이 혁명정부의 공민으로서 평등권을 가지며……", 제3장 제1절 참조.

38)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제7항, 제3장 제1절 참조.

함없이 혁명적 지조를 굳게 지키면서 공산주의자의 영예를 고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나라 녀성들의 이러한 빛나는 투쟁력사를 계승하여 전체녀성들이 새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39]

라고 선언하였다. 즉 항일무력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여성의 높은 투쟁의식과 희생이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기존 관념을 깨뜨렸으며, 여기서부터 여성을 사회적으로 동원, 사회주의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타도대상인 植民地·半封建社會가 女性의 예속에 기반하였고,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없이는 旣存秩序의 根源的 破壞위에 새 질서를 건설하려는 인민민주주의독재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도 여성해방은 요구되었다. 게다가 여성의 참여는 기존질서 파괴라는 思想的 側面뿐 아니라 人力動員의 側面에서도 절실한 요구였다.

김일성은 1945. 10. 25.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현 국제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에서는,

장기간의 봉건통치와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마암아 사회발전이 저지당하였고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있으며 모든것이 파괴되고 혼란된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건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 내야 합니다. 이 무겁고 영예로운 건국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

39) 김일성저작집 1, pp. 257-258.

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야 하며 남녀로소 할 것없이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녀성대중은 큰 몫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새 조선 건설에서 녀성들앞에 나서고 있는 임무는 참으로 중대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은 건국사업에서 수레의 한쪽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잘 달리자면 두바퀴가 다 제대로 굴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국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나가려면 남자들과 함께 녀성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40]

고 강조하면서 建國의 當面課業에서 제기된 女性動員의 必要性을 토로하였다. 이어서 김일성은 "녀성들은 오직 건국사업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옛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 사상의식의 각성과 문맹퇴치·여성조직결성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이로서도 알 수 있듯이 새 질서의 건설에 필요한 여성인력의 확보가 당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 인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에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이 정식화되어 이후 일관된 政策基本目標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에 그 혁명의 내용으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이 선언되어, 이것이 북한 여성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북한의 여성정책에 일정 限界를 內包하게 하였다.

맑스-엥겔스는 생활수단 생산관계의 분업과 생명재생산의 분업 두가지 측면에서 性差別의 起源을 찾고, 이들 性的 分業이 사유재산제도와 상속제도라는 資本主義的 契機에 의해 性的 抑壓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수단 생산의

40) 김일성저작집 1, p. 368.

분업에서의 여성의 격리와 열악한 지위를 극복하고, 이를 社會化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이 광범위하게 사회에 참여하여 經濟的 從屬을 극복할 때 여성해방을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이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生命再生産의 負擔을 最少化하는 아동의 사회적 양육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맑스-엥겔스의 이론은 물론 자본주의 타도라는 그들의 現實的 目標에 여성해방이 기여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여성의 낮은 지위와 경제적 예속에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파괴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사회적 존립조건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론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지라도 맑스-엥겔스의 이론에서는 현실적 필요에서보다 공산주의사회 전체구도 속에서의 평등지위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맑스-엥겔스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가정의 발전적 해소는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終局的 狀態인 것이다.

반면에 김일성은 공산주의사회 전체구도 속에서 여성을 언급한 경우가 드물다. 김일성의 저작 — 연설 혹은 강연 내용 — 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평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여성의 지위를 전체사회구조 속에서 이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김일성이 여성의 낮은 지위를 거의 전적으로 帝國主義·封建的 因習에 歸責시키고 있다는 사실, 김일성의 관심이 항상 具體的 현실의 필요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특히 여성의 지위에 관한 미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현실의 명백한 적 — 제국주의나 봉건주의 — 가 소멸한 후에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리라는 가설은 종국상태를 예측하게 함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봉건적 지위의 타파를 요구하는 논의에서는 의례히 제국주의·봉건유습 등 前社會主義 社會의 特徵으로 간주되는 명백한 적들만이 제시되지, 社會主義制度 下, 혹은 共産主義 完成後의

여성의 투쟁대상이나 여성의 具體的 役割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정책은 북한이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적한 봉건적·제국주의적 잔재가 대내적으로 소멸된 후 출발당시의 혁명성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맑스-엥겔스의 여성해방논리와 김일성의 여성해방논리에 근본적 차이인 동시에, 北韓 女性政策의 內在的 限界이다. 또한 이는 앞에서 언급된 북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특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갖는 북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전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성격으로부터 정리해 낼 수 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양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도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 계획화된 국가 경제질서에 따라 여성은 생산현장·국가건설현장에 동원된다.

북한은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 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41] 이에 의거 여성인력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 또 물질적 요새점령을 위한 技術革命을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3대혁명 소조활동을 통해 참여한다.

이러한 여성의 동원에 수반되는 育兒 및 母性保護問題는 노동법령과 탁아규칙 등에서 구체화되어 처리된다.

셋째, 사상적 요새점령을 위한 思想革命으로서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가 강조된다.[42] 여성을 革命化·勞動階級化 하는 것은 곧 가정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家族利己主義의 克服, 封建的 家族 유대의 타파 등을 의미한다.

---

41) 국토통일원, 북한개요(서울 : 국토통일원, 1986), pp. 151-160.

4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6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pp. 112-135 참조.

넷째, 사상적 요새점령을 위한 文化革命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운동으로 전개된다[43] 여기서의 문화혁명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뿐 아니라 생활양식, 의식의 전승 등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의 준수, 낡은 도덕 및 생활잔재, 즉 축첩과 호적제도 등의 폐지, 사회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 정신의 발양 등이 추구된다.

교육의 사회화는 문화혁명의 주요 경로이기도 하다.

다섯째, 여성들을 단일한 여성조직으로 통합, 당의 정책과 지도를 전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침투시킨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1945, 여맹을 조직하여 여성동원 및 의식개조의 기초조직으로 삼았다.

이상이 북한여성정책의 1945년이후 지금까지의 일관된 흐름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內的 限界에 따라 강조점이나 具體的 內容의 變化를 수반한다.

43)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데 대한 우리당의 정책(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참조.

Ⅳ. 北韓 女性政策의 展開過程

1. 時期區分

앞장에서 정리된 북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社會經濟的 與件에 따라 구체화되면서 시기별로 강조점의 차이 혹은 정책 내용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구체화 혹은 변화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각 시기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一般的 自體發展過程論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최고인민회의나 노동당 대회 자료를 통해 나타난 변화에 따라 獨自的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설계를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 의거해서 정리해왔다. 또한 북한의 여성정책이 이러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지향하는 전체적 목표속의 한 부분으로서 구체화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흐름에 맞추어 북한여성정책의 변화를 북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북한이 자체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발전과정을 언급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시의 성과보고 및 노동당대회에서의 성과보고 등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1956년의 노동당 제3차대회와 1972년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의 金日成 報告이다.

이 둘에서 일관된 것은 政權의 性格을 1947년까지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로, 1947년 이후는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로 본 것이다.

특히 1972년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 開始以後의 發展過程을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947년 시작된 사회주의혁명은 전쟁으로 인해 일시중단되어 전후에 다시 재개된다는 사실과, 전쟁과정의

과괴로 전후에 시급히 개인영농의 집단화, 개인상공업의 폐지가 요구되어 1955년 4월 태제에서 본격적 사회주의혁명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 1955년 4월 태제의 요구를 1956년 노동당 제3차대회가 定式化. 이후 본격적으로 社會主義的 改造事業이 展開된다.

그리하여 1972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農業協同化의 완성과 個人手工業·個人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성공적으로 完遂되어,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북한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었다"[1] 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는 북한의 과도기 프롤레타리아독재가 1972년으로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어서 이 보고는 과도기 이후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 점령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 1972년 이후 社會主義 制度 確立後의 프롤레타리아독재를 闡明하고 있다.

이러한 1972년의 북한의 자체발전과정 평가를 토대로, 북한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第1段階: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期(1945—1946)

이는 해방이후 임시위에 의해 주도된 각종의 사회혁명 시기로서, 주요 타격대상은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질서였다. 이 시기의 주요개혁은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 노동법령 제정,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봉건적 유습잔재퇴치령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이 시기를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하기 전에 封建的·植民地的 秩序를 파괴하는 反帝反封建民主主義 革命時期로 보면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이끄는 정권인 임시위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자료집 Ⅲ(서울 : 국토통일원, 1988), p. 491.

(2) 第2段階;社會主義 革命 準備期(1947－1950)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에로 계속 이행하는 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과정[2] 이므로, 임시위의 뒤를 이어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성립된 인민위는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한다. 이 준비단계에서 인민정권을 강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성립시키고 사회주의혁명의 기반을 닦아 나가다가 채 기반이 완성되기 전에 전쟁을 발발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 수행이 중단된다.

(3) 第3段階;戰爭과 戰後 復舊期(1950－1960)

전쟁과 전후에 모든 자원은 전쟁수행 및 전후복구에 총동원되어 사회주의 혁명은 지체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개인영농·개인상공업·개인수공업의 기반이 파괴되고 반혁명세력이 소멸된 것은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틀이 되었다.

전후 복구과정에서 이미 피폐해진 개인영농·개인상공업·개인수공업으로는 고도의 생산력을 기대할 수 없어 빠른 속도로 농업협동화, 수·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수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기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일단계로 복구한 북한은 1955. 4, 김일성이 노동당중앙위에서 제시한 4월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3] 의 발표로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확립을 위해 전후복구기부터 시작된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리하여 1958년 농업협동화의 성공적 완수를 선언하기에 이르고, 곧이어 상·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수된다.

그와 동시에 북한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

2) Ibid., p. 488.
3)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6(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485－506.

날카로운 계급투쟁[4] 때문에 1955. 4.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보고,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대로 당사상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社會主義建設의 2大方向인 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黨思想事業強化가 결정되자 1956년, 제3차 당대회를 소집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의 총매진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1957—1961의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과 함께 반김일성세력에 대한 숙청사업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당의 투쟁,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분쇄"[5]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4) 第4段階;社會主義의 全面的 建設期(1961—1971)

북한은 1961년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돌입을 선언한다.[6] 전후복구와 아울러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과업이 완수됨으로써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시기는 1961. 9. 11—18 사이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로부터 기산되어 7개년 인민경제계획과 그를 위한 기술·문화혁명으로서 경제에서의 완전한 사회주의제도 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과도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연속성이 천명되어 과도기 이후의 북한사회 성격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1970,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와 1972,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社會主義的 轉變의 完遂가 선언되어, 그후로부터 앞에서 잠정적으로 명명한 후기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시작된다.

---

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략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93—515.

5)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참조.

6) 조선로동당 략사, p. 418.

(5) 第5段階:社會主義 鞏固發展期(1972—現在)

이는 과도기 이후의 프롤레타리아독재시기로서 전세계적 범위의 공산화가 실현될 때까지 공산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한다.

이 시기부터는 제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아니라 共産主義的 人間을 위한 思想敎養, 즉 全住民의 革命化·勞動階級化, 全社會의 主體思想化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김일성 우상화·김정일 세습체계가 가시화됨으로써, 사회의 혁명성이 쇠퇴하고 경제도 서서히 침체기에 접어들어 경제력에서 남한에 추월당한다는 사실은 북한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여성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期(1945—1946)

(1) 社會的 背景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전개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는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노동법령제정, 남녀평등권 법령제정,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제정등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량의 혁명을 추진하였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서는 중요산업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제외하면 모두가 여성의 지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였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여성억압을 근간으로 하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親日地主 및 日本人 統治機構가 남아있었고, 농촌에는 전체농가호수의 4%이내의 지주가 총경지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7] 여성들은 대부분 농촌에서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강제혼, 매매혼, 축첩과 같

7)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 159.

은 혼인관계를 강제당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이 물러간 후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일제사상잔재—특히 노예근성—와 封建的 思想殘滓가 남아있었다.[8] 이들 帝國主義的·封建的 사상잔재중에서 사회혁명을 특히 방해한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와 토지소유의 집중이었으므로 북한은 토지개혁과 남녀평등권법령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들을 극복하려 시도하게 된다.

(2) 土地改革과 여성에게의 土地分與

북한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권을 경작자에게 주기 위하여[9] 토지개혁을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토지개혁은 각급 인민위의 지도하에 집행되었는데, 고용농과 빈농으로 구성된 11,500여개의 농촌위원회를 농민동맹·여맹을 비롯한 모든 대중단체가 지원,[10] 20일이라는 기록적 단시간에 개혁의 완수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토지개혁법은 친일파 및 일인소유 토지의 몰수와 이익분배, 분여토지의 매매·소작·저당의 금지, 과수원·산림·관계시설 국유화 등이 규정되었다.

토지개혁이 여성들에게 미친 影響은 여성들에게도 일정토지를 분여, 여성들의 經濟的 基盤을 제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土地改革法令 施行細則 제15조에서는 고용자와 토지없는 농민과 토지적은 농민에 대한 몰수된 토지의 분배는 가족수와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을 가진자의 수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아래의 分配基準表를 제시하였다.

---

8) 조선로동당 략사, p. 277.
9)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1조, 차낙훈·정경모(공편), 북한법령연혁집 제1권(서울 :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69), p. 137.
10)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p. 162.

[토지 분배기준표][11]

남	18세—60세	1점
여	18세—50세	1점
청년	15세—17세	0.7점
소아	10세—14세	0.4점
동	9세이하	0.3점
남	61세이상	0.3점
여	51세이상	0.3점

여기서 보이듯이 비록 10세의 勞動能力年齡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여성도 남성과 같이 1점을 받아 토지를 분여받게 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주가 소멸하고 여성도 토지를 분여받게 됨에 따라 과거 지주—소작관계에서 보상없이 여성이 졌던 가사와 경작의 이중부담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토지개혁과정을 통해 여맹과 공산당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되게 되고, 토지개혁의 결과 토지를 분여받은 고농과 빈농의 大量入黨으로 노동당의 간부구성이 基層民衆 中心으로 변화하게 된다.[12]

이로인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맹등을 통한 여성 의식각성운동, 여성동원운동이 호소력을 지니게 되어 여성정책의 전개에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3) 勞動法令의 제정

1946. 6.24, 임시위가 제정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11)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해방년보(서울 : 문우인서관, 1946), p. 413, p. 434.
12) 이러한 토지개혁의 정치·경제적 결과는 1953년 이후 농업협동화의 기반이 되었다.

(라) 노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 수 없는 자들의 년금

(마) 양육자를 상실한 경우에 유가족들께 주는 연금(社會保險)의 절차

……(하략)

특히 16조에서 18조의 규정은 여성의 출산·육아와 관련, 母性保護를 보장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모성보호규정은 더욱 강화된다.[14]

이 노동법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모성보호를 규정함에 따라 여성들이 생산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남성에의 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경제생활에서의 지위가 또한 향상된다.

이 역시 여성정책전개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4) 男女平等權法令의 제정

1946. 7. 30, 임시위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다.

남녀평등권법령은 1946. 1. 22, 발표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초안"에 따른 것인데, 초안이 발표되자 여맹은 이 결정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하여 7. 27, 평양에서 열성자대회를 열어 이를 절대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서까지 채택한다.[15] 이러한 지지대회는 각도 여맹단체에서 모두 열려 7. 30, 동

14) 산전산후 보조금지출액 증가율(%)

년 도	1947	1949	1954	1955	1956	1957
증가율	100	1, 460	3, 547	6, 665	8, 267	24, 582

출처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8(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133.

15)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78) 참조.

은 식민지 착취의 잔재를 청소하고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물질적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노동법령은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8시간노동과 사회보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급휴가, 노동안전 및 위생조건의 개선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여성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13]

제7조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기술을 가진 노력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제14조 모든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노동부녀와 여사무원들이 임신중에 있을 때는 해산 전 35일, 해산 후 42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제정한다.

제15조 건강상태에 의하여 전보다 輕한 노동에 넘어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 임신중의 여자는 임신 육개월전부터 시작하여 산전휴가에 이르기까지 輕한 노동에 넘어갈 수 있으며 그동안의 임금은 최근 육개월간의 평균보수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16조 로동하는 여자들로서 1년 이내의 유아를 가진 경우에는 일일 최고 30분씩 젖먹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유모의 젖먹이는 시간의 임금은 유모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17조 胎母와 유모에게는 제정한 시간외의 노동이나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제18조 각 기업소 사무소 및 경제부문의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업무적 社會保險制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에게 대한 보조금

(나)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다) 葬禮時의 비용보조금

1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73-279.

법령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동 법령 전문에서는 일본 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으로써[16] 이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남녀평등권법령〉

제1조 국가 경제 문화적,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녀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 또는 국가 최고기관에 있어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녀성들은 남자와 동등의 로동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은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곤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녀성들도 남자와 동등의 자유결•이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이혼과 아동 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 연령은 녀성 만17세, 남성 만18세부터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여자들을 첩으로 매매하는 여성인권유린의 폐해를 금후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전2항에 위반하는 자는 법에 처한다

16) 김일성저작집 2, pp. 327-328.

제8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의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이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분배의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법령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에서처럼 제1조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 남녀평등 원칙을, 제2조에서는 선거권·피선거권의 평등을, 제3조는 노동법령 제7조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제8조까지는 가족법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17]

이 기본입장은 경제적 계약에 의한 자본주의적 가족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남편의 우위"와 "婚姻解消의 不能"이라는 조건을 거부하여 이혼을 허용한 소련의 경험에 따르고 있다. 이로 보면 북한 가족제도의 원리와 이념은 엥겔스의 이론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남녀평등권령을 구체화한 것이 1946. 9. 14, 임시위 결정78호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시행세칙"이다.

〈시행세칙〉

제1조 녀성은 남성과 같이 지방(도·시·군·면·리)및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또 위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녀성은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녀성은 남성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17) 남녀평등권 법령은 "공화국 가족법의 기본초석을 놓은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조일호, 조선가족법(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58), p. 47.

제3조 봉건적 유습인 남존녀비사상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학대, 폭행 기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제4조 녀성은 남성과 같이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녀성은 피상속자와 적을 같이 하는 한 남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6조 결혼으로 말미암아 타가로 적을 옮길 때에는 녀성은 친가에 대하여 북조선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자기의 분으로 분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결혼전의 夫 또는 婦의 재산은 각 그 소유에 속한다. 결혼생활중에 부부가 소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8조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서를 당사자가 소관 시·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서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 당사자의 쌍방의 상대방의 신체상태(정신병, 성병, 호흡기병의 유무, 불구여부)를 잘 알고서 결혼한다는 것, 당사자의 결혼 회수 및 당사자가 가진 자녀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결혼연령에 달하지 못한 자는 결혼할 수 없다.

민며느리와 대릴사위는 금지한다.

제10조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의에 의한 이혼소를 소관 시·면 인민재판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소관인민재판소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도저히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이혼판결을 한다.

제13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일시적 감정에 기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히 고려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서 일정한 기간 소송수속을 중지한다.

제14조 재판소는 전조의 기간 경과 후 2주간 내에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호출한다.

제15조 전조의 호출에 의하여 출두한 당사자의 일방이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할 때는 이혼판결을 한다.

제16조 제15조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원고가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된다.

제17조 2회 이상 이혼하려는 자의 이혼소송의 관할은 도재판소에 속한다. 자진하여 2회 이상 이혼하려는 때는 이혼서 제출시 혹은 이혼소송제기시에 5천원의 금액을 소관 인민재판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관 도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전항의 금액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이혼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자녀양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소관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전조의 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남성 혹은 녀성으로 하여금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양육하는 자녀가 1인인 때는 그 수입의 20%, 2인인 때는 35%, 3인 이상인 때는 50%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동수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의 수입은 납세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의하여 정하되 실지수입과 차이가 있을 때는 수입의 평정을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18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불한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1년중 적당한 시기에 1년분을 지불할 수 있다.

제21조 녀성은 이혼을 할 때 있어서 전남편에 대하여 그 결혼중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의 분배와 북조선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자기의분으로 분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후설의 규정은 동 법령에 의하여 분여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동시에 자녀 양육자, 자녀 양육비, 재산 및 토지분배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23조 녀성의 법률행위능력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 기타 녀성의 권리를 제한한 법령과 규칙은 일체 무효로 한다.

제24조 기만 또는 위협적 수단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결혼하려는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할 때
2.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하게 할 때
3. 상대편의 동의없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할 때
4. 부부로 하여금 이혼하게 할 때
5. 이혼하려는 부부로 하여금 이혼하지 못하게 할 때
6. 이혼하려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혼하지 못하게 할 때

제25조 부녀의 부모, 친족 또는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녀를 출가시킴에 있어서 상대편인 남성 또는 그 부모, 친족 혹은 보호자로부터 금전, 재물 또는 노력의 제공을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 일부일부제(一夫一婦制)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 시행전의 기정사실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제27조 재판소로부터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선고받은 자로서 이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부녀로 하여금 창기영업(公私娼妓生)을 시킨자 또는 자진하여 위 영업을 한 부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1조는 여성의 피선거권과 국가기관 • 정당 • 사회단체 • 공공단체 임직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여성들이 여맹을 비롯한 제반조직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4조—7조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규정,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8조는 자유결혼과 등록혼(법률혼)을 규정, 사실혼을 부인하고, 10조—22조의 많은 부분을 이혼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소련의 경험에서 보면 1917년—1935년의 기간동안 소련은 엽서이혼제—등록사무소에 이혼신청으로 이혼성립—를 채택하다가 이후 이혼을 규제, 1944년—1968년까지 이혼이 금지되었듯이, 북한도 동시행세칙에서 일정 규제한도 내에서의 協議離婚과 裁判上 離婚을 인정하다가 후에 재판상 이혼만 허락하는 변화를 보인다. 이는 제2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가족관계의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데다가, 이혼의 무제한 허용이 사회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가져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협의이혼의 결과 당간부들이 무식하고 늙은 조강지처를 유기하고 젊은 지식인여성과 결혼하는 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사회주의 가족의 강화와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명제를 내걸고 1950. 3. 7, 최고재판소 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18] [19]

그런데 동 시행세칙 21조의 재산분배청구규정은 1958. 8, 농업협동화 완성후에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상의 남녀평등권 법령과 동 시행세칙으로 여성의 법적평등이 확보되었으나, 과도기적으로 기존의 축첩을 인정한 것과 함께 사회전반에 온존하는 여성의 예속적 지위때문에 김일성은 1946. 8. 2, 여맹원들에게 이 법령의 제정으로 여성해방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할 일이 많다

---

18) 최달곤, 북한 혼인법연구(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p. 117.

19) 이후 북한은 1956. 3. 8, 내각결정 24호로 협의이혼제도 폐지, 1956. 3. 16, 사법성규칙 제9호 "이혼사건 심리절차에 따른 규정"으로 이혼의 규제를 강화했다.

고 하여 투쟁을 촉구하고 문맹퇴치 등 지식을 축적하도록 요구한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령과 시행세칙 시행결과 각급 인민위, 인민회의 등에 여성의 진출이 강화되었다.[21]

이상과 같이 동 법령과 시행세칙은 남녀평등의 법적근거를 제공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향후 북한여성정책의 골격을 구성했다고 하겠다.

(4) 公民證교부

1946. 8. 9, 임시위 결정 57호로 발표된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로 봉건적 가족관계의 반영인 호적을 대신하여 公民證으로 신원을 식별하도록 했다. 이는 아직 戶籍을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으로 하여금 가족을 떠나 개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계기를 성립시키고,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공민증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신분적 장치로도 의의가 있었다.

(5)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

임시위는 결정 제163호로 1947. 1. 24, "북조선의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22] 을 공포했다.

동법령은 전4조와 비고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4개조 모두 결혼과 관계된 봉건유습잔재 퇴치를 규정하여 남녀평등권 시행 이후 반년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봉건유습잔재가 뿌리깊음을 반증한다. 남녀평등권 법령에 이미 규

20)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녀성 1979. 7호(평양 : 근로단체출판사, 1979), p. 8.

21) 1949년 현재
각급 인민의 여성위원 9,522명, 북조선인민회의 여성대의원 34명(14%), 농민여성위원 6,101명, 여성판사 13명, 검사 4명, 참심원 532명 등으로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77.

22) 차낙훈 • 정경모, op. cit., p. 663.

정된 일부일처제와 자유결혼을 위해 또다시 법령을 만들어야 했던 것을 여전히 남아선호에 의한 축첩이 성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사회개혁만으로 사회구조가 일거에 달성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6) 女盟의 결성

1945. 10,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에서 제시했던 4대 당면과업에서는 당 주위에 군중을 결속시키기 위해 각 사회단체를 조직할 것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반제반봉건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에서 중요한 연결조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45. 10. 15, 평양시에서 여성들에게 행한 강연 "현 국제국내정세와 여성들의 과업"에서 대중적인 민주주의 여성조직을 결성하도록 요구하였다.[23] 이 연설이후 당의 적극적 지원아래 1945. 11. 18,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이 창립된다. 여맹의 초대위원장 박정애는 소련통 항일투사출신이며, 후에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까지 역임한 북한의 대표적 여성인사로, 정열적인 활동으로 초기 여맹을 빠른 시간에 궤도에 올려 놓았다.

이 연맹은 1945. 5, 제1차대회에서 7개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민주여성총동맹 강령〉

1) 우리는 민주주의적 녀성과 대동단결하여 김일성장군이 발표한 20개조 정강을 그 기초로 한 조선 민주주의 정권수립을 위해 총역량을 집중함.
2) 녀성에게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정강을 지지하며 이 영예를 전 조선녀성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분투함.
3) 우리는 민주건설을 파괴하는 일체 팟쇼분자,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를 잔멸하기 위해 분투함.

---

23) 김일성저작집 1, p. 372.

4) 조선문화의 향상과 정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투함.

5) 녀성의 문맹퇴치와 생활개선을 위해 각 문화운동과 산업부흥에 적극 참가함.

6) 녀성의 국가적 옹호를 요구함.

7) 봉건적 도덕인습과 미신타파를 위해 노력함.

강령의 내용은 "여성에게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지지하며 이 영예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국가건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선동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여맹조직의 창설목표가 사회적동원 지원에 있음이 다시 확인된다. 그러나 여맹은 단일한 여성조직으로 1973년에는 270만에 달하는 맹원을 포섭, 세를 과시하였고 여맹을 통해 가족구조 개편, 여성재교육과 사회화 등의 정책이 주민에게 비교적 신속히 침투하게 된다.

(7) 成果와 限界

이렇게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인 임시위에 의한 혁명적 여성정책은 이후 40여년을 통해 수행된 제여성정책의 전체보다도 질이나 양에 있어 더 다양하고 철저했다.

이후의 제반여성정책은 이러한 기존정책의 부분적 변화나 보충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시기의 주요개혁으로 북한 여성정책의 전부를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듯이 토지개혁의 성과는 농업협동화 이후 무의미해지고 남녀평등권 법령의 성과는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뿐 뿌리깊은 관습까지 해소하기에는 허다한 시간이 요구되었다.[24]

24) 오히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사회가 안정되자 다시 살아나 현재까지 이어져, 여맹조차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고유업무"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생산에 동원하기에는 노동법령의 제반조치로는 여전히 미흡하여, 탁아소설치와 교육의 사회화가 요구되었다.

결국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지위향상, 남녀의 법적 평등, 여성조직의 동원 등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여성에 대한 기존의 관습과 봉건적 유습의 철폐, 여성의 자각과 의식개혁, 육아의 사회화 등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인민위,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은 이를 근거로 하여 탁아소 설치등 육아의 사회화, 3대혁명의 추진등 미진한 혁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3. 社會主義 革命 準備期(1947—1950)

(1) 社會的 背景

임시위에 의해 추진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결과 북한에는 대토지소유, 대자본가 등이 소멸하여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는 타파되었다. 또한 제반 법령을 통해 봉건적 가족관계의 타파가 제시되었고, 여성의 정치적·경제적·법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반봉건 상태는 어느 정도 극복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곧이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인 인민위와 인민공화국이 들어선다. 인민위와 인민공화국의 차이는 헌법에 따른 國家性의 인정여부에 불과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는 過度期政權으로 連續性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이 긴요하다고 판단, 이 시기에 경제제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1947—50년 사이 2년간 1개년 인민경제계획이 수립·집행되고 1949—50년 사이 2개년 인민경제계획이 실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화폐개혁, 농업현물세제도 확립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경제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전부문에 전주민의 참여가 필요하였다. 당시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복구도 완수되지 못했고 기술집약적 산업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으므로, 생산과 건설에 다수의 노동력을 열성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노동력 질의 향상을 위한 문맹퇴치운동과 노동력 량의 증대를 위한 동원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여맹활동의 강화와 탁아소 설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정책의 政策目標는 경제계획하의 여성동원과 노동력 질의 향상이며, 이를 위한 政策手段으로서 헌법적 보장과 여맹강화, 탁아소 설치 등의 경로를 택한다.

(2) 人民共和國憲法의 제정

1948년 제정된 인민공화국 헌법[25] 은 제1장 근본원칙에서 생산수단의 소유를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에게 허용하고 있고, 토지의 개인소유를 허용하였다.

이는 여전히 소자본 상공업•소규모 개인영농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잔존을 의미한다.

이 인민공화국 헌법은 여성의 평등을 명문화,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국민은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재산 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 민족별 성분 신앙 거주기간 재산 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

25) 차낙훈•정경모(편), 6p. cit., pp. 3-10.

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보이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부여는 봉건적 관습에 의한 서자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이나, 일부다처제의 현실을 긍정해버리는 효과도 지녔다. 또한 헌법에서 여성의 평등을 단일조항으로 명문화, 여성의 권리 보장에 노력한 점은 당시 북한사회에서 여자가 인간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여자로만 분류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러한 헌법규정이 여성의 권리향상과 여성동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女盟활동의 강화

經濟建設과 政權의 強化라는 사회·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위해 김일성은 대중조직을 광범히 동원하고자 시도하였다.

김일성은 1947. 10. 13. 북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0차회의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안전대로서의 사회단체를 잘 결속하도록 요구한다.[26] 즉 사회단체의 기층조직인 초급단체사업의 강화와 일상적 지도·방조의 강화, 동맹원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 등을 통해 대중조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당의 정책이 일반주민에게

2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482—487.

잘 전달되도록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7. 10. 20, 김일성은 북조선로동당 중앙위 상무위원회에서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27] 라는 연설을 하게 된다.

동 연설에서 김일성은

> 녀성동맹은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고 있는 대중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안전대입니다. 녀성동맹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녀성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녀성군중을 굳게 결속시켜 당의 대중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으며, 그들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할 수 있습니다.[28]

고 하여 여성 사업의 강화가 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와 여성의 동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여맹은 사업의 중심을 근로녀성에 두고, 도시와 인테리 여성 중심사업 행태를 변화시키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여성의 동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탁아소·유치원의 설치에 여맹이 앞장설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연설에 맞추어 여맹은 동맹원 확대와 경제현장에의 진출 유도에 노력한다. 아울러 당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 농업현물세 징수사업에 동맹전체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29]

---

27) Ibid., pp. 488—496.

28) Ibid., p. 488.

29) 국토통일원, 북한년표(1945—1961)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pp. 96—101 참조.

(4) 탁아소의 설치 규정

탁아소의 설치는 1947. 6. 13. 인민위건국 명령5호 "탁아소 규칙"으로 시작되었으며, 1949. 2. 보건성 규칙1호 "탁아소에 관한 규정"[30] 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의하면, 탁아소는 생후 1개월—만3세의 유아를 가진 노동여성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데 봉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그 경영은 국가 및 사회단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또한 각 탁아소의 직원정원, 직원자격, 탁아소 경영방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국명령이나 보건성규칙 어디에도 탁아소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어서 얼마만큼의 탁아소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데, 이는 아마도 당시의 경제력으로 인해 동 규칙이 宣言的 意味만 지니게 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5) 成 果

이 전단계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에 비해 이 시기는 경제건설과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政權建設에 관심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은 빈약하였다. 다만 헌법에서 여성동등권을 명문화 한 것과 탁아소 설치규정을 발표한 것은 제한적이나마 당국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정도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정책은 경제사회건설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지지의 확보를 당면과제로 하여, 여맹조직 강화라는 수단을 통해 열성맹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맹의 활동은 1945—1950년의 기간에 눈부시게 전개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가 여성의 조직동원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

30) 국토통일원, 북괴법령집 3(서울 : 국토통일원, 1971)

다.

그러나 여맹의 강화 외에는 두드러진 여성지위향상의 증거자료는 찾을 수 없고, 탁아소 설치의 제도화는 전쟁이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다만 1949. 10.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를 약속한 것[31] 과 탁아소 설치규정을 발표한 것은 다음단계의 북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무상교육)는 1950. 9.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유야무야되었다가 전후인 1956. 4. 제대로 실시된다. 마찬가지로 탁아소 설치도 전쟁후에 활발히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32] 즉, 이 시기의 교육의 사회화 시도는 전후에 실현될 것을 예정하는 宣言的 行爲에 그치고 있다.

4. 戰爭과 戰後 復舊期(1950—1960)

(1) 社會的背景

1950. 6. 25. 발발한 전쟁은 1951년 이후 지리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갔다가 1953년에야 휴전협정의 조인을 보게 된다.

전쟁과 전후의 당면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승리이고 전후 경제재건이다. 이를 위해 戰時 總動員體制가 가동되었다.

---

3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5(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73—280.
32) 탁아소·유아원 현황.

구분 / 년도	탁 아 소		유 치 원	
	탁아소數	수용인원	유치원數	수용인원
1946			64	3, 918
1949	12	620	116	8, 656
1953	63	2, 165	19	1, 048
1956	224	6, 538	173	12, 015
1960	7, 624	394, 489	4, 470	295, 484

출처:조선중앙년감 1964, p. 204, p. 328.

전쟁승리를 위해서는 대내 결속과 전시물자의 보급, 戰意의 지속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동원되고 각종의 사상교양이 실시되었다. 뿐만아니라 전시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전쟁중에 "현 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정권의 임무와 역할"[33] 이라든가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34] 제하의 연설을 통해 행정조직을 개편·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전쟁중에 郡의 규모를 축소, 숫자를 늘리고 반면 리의 규모는 확대, 숫자를 줄이는 등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반관료주의적이며 군중적 행정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패배에 가까운 소모전이 지속되자 김일성은 박헌영일파를 숙청, 정권의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쟁의 책임을 남로당에 전가시켰다. (1952. 12, 당중앙위 5차 전원회의)

전쟁은 끝났다. 변한 것은 직선이던 38선이 요철을 그리며 복잡한 곡선으로, 휴전선으로 바뀐것 뿐 얻은 것은 없었다. 남은 것은 미국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평양과 피폐해진 경제뿐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死守한 祖國解放戰爭의 偉大한 勝利라고 평가하고서 戰後 人民經濟 復舊에 착수한다. 전후복구기에도, 당연히, 모든 것에 우선하여 경제건설이 요구되었다.

김일성은 인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아무리 전쟁피해가 크고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또다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에로"라는 구호를 내세워 전주민을 전후복구건설에 동원한다.[35]

1954년부터는 3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쟁으로 영락한 인민생활을 회복하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인민경제를 전쟁전

33) 한석봉·심형일,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3(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158.
34) Ibid., p. 162.
35) 조선노동당략사, p. 394.

수준에까지 회복하며,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36] 함으로써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어 1955. 4, 김일성은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제하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확립, 농업협동화,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방침을 천명하였다.[37]

그런데 전쟁으로 많은 개인영농업자와 개인상공업이 영락한 것은 이러한 社會主義的 構造改編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농업협동화는 개인소유 관념의 온존이라는 전시기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불식시켜 전후복구와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로 연결되었다. 농업협동화는 1958년 완수되고, 거의 동시에 개인 상공업, 개인 수공업도 협동조합화 되었다.

전후복구와 동시에 경제조직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면서 1956. 4. 23—29, 조선로동당 3차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3차 당대회는 전후 정권투쟁의 재연으로, 최창익일파를 숙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당 종파투쟁 등, 격렬한 사상투쟁을 벌이게 된다.

당시 투쟁에서 승리한 김일성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과 천리마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는데, 사회제도가 사회주의화하는 것과 맞추어 의식의 사회주의화도 촉구한다.

1958년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한"[38] 투쟁으로 천리마운동이 강화되고,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39] 등의 연설을 통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반대하는 철저한 思想敎養·思想鬪爭을 촉구하였다.

이후 당사업방법의 반관료주의화, 농촌경리에서의 청산리 방법등이 채택

---

36) Ibid., p. 399.

3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9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28—244.

38) 조선로동당략사, p. 470.

3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580—606.

되어, 이후의 사회주의적 농촌경영·행정경영의 지침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쟁과 전후복구기는 전쟁피해복구와 동시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는 시기였으므로 노동력 동원과 사상교육, 사회재정비 등이 절실했다.

따라서 이시기 여성들에게 요구된 것도 건설현장에의 참여였던 바, 이시기 여성정책의 기별 정책목표는 노동력동원과 사회재정비에 있게 되고, 정책목표의 실현수단으로는 여맹동원, 탁아소 설립확대, 공민신분등록제, 협의이혼의 폐지 등이 채택되었다.

(2) 女盟의 動員

전쟁과 동시에 김일성은 6. 26, "모든 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40] 경주할 것을 요구하는 방송연설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후방에서 적극 전쟁에 협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1951. 1. 28,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금후사업방침에 대하여"[41] 제하의 연설에서 모든 군중단체들을 통해 사상교양강화, 승리에 대한 신심과 적에 대한 증오심 고양을 전개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戰時 動員體制와 群衆團體의 活動強化 촉구에 맞추어 1951. 1, 여맹은 남북조선여맹 명의의 "미군만행규탄호소문"을 국제여맹과 각국 여성단체에 발송, 1951. 5, 국제여맹조사단이 "미제침략군과 이승만군대가 감행한 만행에 대한 국제여맹조사단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동원하였다.

또한 여맹은 전후방에서 인민군에 헌신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전시에 여성이 하나의 兵站物化하는 것에 여맹이 반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맹간부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찾아다녔다는 후문[42] 이 남을 정도로 여맹의 조직적

40) 김일성저작집 6, pp. 9-16.
41) Ibid., pp. 283-292.
42) 귀순자 증언 및 6.25 관련 증언 종합.

호소는 열렬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맹위원장 박정애는 1951. 4, 스탈린상까지 수상하였는데, 이 상의 상금 10만루블 전액을「평남 애국열사유자녀 기술학원」에 기증, 전시상자 유자녀 원호에도 여맹이 앞장서도록 촉구한다.[43]

이에 앞서 여맹은 조직을 개편, 한반도 유일의 여성단체로 자처하게 되는데, 1951. 1. 20, 남북조선여맹중앙연합위원회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은 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강화되게 되었다.[44]

전후인 1954. 8. 17, 여맹은 전쟁중의 여성의 활동과 전쟁피해 복구에의 참여를 소개하는 전국여성대회를 소련•중공•월맹 등 각국 여맹대표와 국제여맹대표 참가하에 개최, 전시•전후 여맹의 활동을 소개하고 또한 전후 복구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3) 內閣決定 84호와 탁아소 증대

1958. 7. 19, 발표된 내각결정 84호[45]는 "인민경제 각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전 5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1961년까지 전종업원에 대한 여성노동력의 비율을 교육•보건부문에서는 60%이상, 기타에서는 평균 30%이상까지 제고시킬 것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탁아소•유치원, 공동세탁소 등의 편의시설을 기관•기업소들의 기존 건물을 이용하거나 신축, 설치토록 하고, 시간별 임금제도와 시간제근무, 시간제 탁아소운영 등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전문학교 등 각종 기관의 학생과 수강생 중 여성비율을 점차 높이도록 규정, 각 기업과 학교에 강제적으로 여성을 취업•수

43) 북한년표, pp. 205-207.

44) 1945. 8, 북한에 여맹이 창립되기 전에 남한에서는 건국 부녀동맹이 결성되었다가, 평양에서 여맹이 창립되자 한달 후인 1945. 12, 조선부녀총동맹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서 남북조선여맹은 북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과 조선부녀총동맹을 칭한다. 이태영, 북한여성(서울 : 실천문학사, 1988), pp. 164-168.

45) 국토통일원, 북괴법령집 2 (서울 : 국토통일원 1971), p. 554, 내용. p. 77.

용토록 하였다.

이 결정은 1956. 12.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회주의 경쟁운동" 명목하의 勞動強化를 통한 생산증대계획 및 1957년부터 전개된 천리마운동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女性人權의 입장에서 보장되기 보다 社會的 必要에 의해 強制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여성노동력은 1953년 대비 213%, 전년대비 200%의 증가율을 보인다.[46]

또한 이 결정에 따라 탁아소 설치도 증대되어[47] 1956년 대비 1960년의 탁아소 수는 340배의 증가를 보인다.

(4) 公民의 身分登錄 強化(내각 결정 28호)

1946년부터 실시된 공민증제도는 북한 주민 識別과 住民統制에 유효한 도구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1955. 3. 5. 내각결정 28호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공민증의 내용과 사회안전부의 확인절차, 혼인등록 절차등을 강화, 사회재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이어서 1958. 5. 30. 당 상임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를 논의,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1958—1960년말

46) 북한 부녀노동력 증가추세

구분 / 연도별	부녀노동력의 증가율	부녀노동이 점하는 비율
1953	100%	26%
1956	102%	20%
1957	106%	20%
1958	213%	29%
1960	—	34%

출처:이태영, 북한여성(서울:실천문학사, 1988), p. 190.

47) 조선중앙년감 1964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4), p. 328, p. 204. (주32)참조).

까지 전개하였다.[48]

이 집중지도사업에서 북한은 주민의 사회성분을 기준으로 "믿을 수 있는 층", "믿을 수 없는 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유사시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핵심세력,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신분등록 강화는 월남자 가족이나 前地主등 체제 반대적 입장의 사람들을 식별, 따로이 관리하도록 하여 체제안정에 기여하고, 호적·호주 등의 기존가족 관념의 해체에 기여하였다.

한편 公民의 身分登錄規定 제10조는 婚姻登錄節次를 거주지 신분등록소에 부부쌍방이 동시에 출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쌍방의 공민증에 등록되도록 규정, 북한의 혼인성립을 등록해 두는 登錄婚制度를 확립한 것이기도 하다.

(5) 協議離婚의 廢止

1956. 3. 8. 내각결정 24호는 협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만 허용한다. 이는 반제반봉건혁명기부터 허용되고, 반혁명적 요소와의 투쟁을 위해 여맹이 지원하여 더욱 강화된 이혼의 물결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혼을 제한할 필요에서 제기된 것이다. 북한을 이에 관해

> 해방후 북반부에서의 혁명발전과 민주건설의 진전에 따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았던 낡은 결혼관계로서 파기되어 마땅한 것은 기본상 이미 다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원칙 위에서 견고한 결혼과 가족이 수립되고 공고해지기 시작한 조건에서는 리혼에 대한 사소한 경솔과도 투쟁하며,[49]

4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 북한연구소, 1983), p. 876.
49) 조일호, 조선가족법(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58), p. 129.

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가정에 대한 社會主義的 理想의 구체적 형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해체한 결과의 부작용을 "恣意的偏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가정해체 → 가정약화 → 재강화는 소련에서도 고민한 문제이다.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1956년이후 이혼자유를 제한, 가정의 재강화를 고수하면서 사상혁명을 통해 가정의 혁명화를 도모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는 북한이 가정을 사회의 기초단위로 긍정하여 가정을 통한 혁명을 도모하는 것으로, 가정의 성격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혼란을 반영한다. 즉 맑스-엥겔스식의 경제적 계약과 혼인해소의 불능에 기초한 가정을 해체하여 가정을 人間 對 人間의 愛情的 結合으로 재구성하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가정의 기존형태 유지를 택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반제반봉건 혁명완수로 억압적요소가 소멸, 자의적 편향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함으로써, 맑스-엥겔스의 사회주의적 가정관과 달리 반제 반봉건의 過程으로서만 이혼을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식민지·봉건적 질서 해체의 수단이며 과정으로만 이혼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구질서가 해체된 후에는 가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가족형태가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한 것을 무시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정책이 家父長的 不平等構造의 變化를 위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植民地·封建 秩序解體의 手段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혐의를 이혼과 가정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하튼 협의이혼의 폐지이후, 북한에서 가족관계는 사회의 기초적 관계로 정착한다. 그리고 사회의 혁명화도 가족의 공산주의적 인간화를 추구할망정 가족구조의 혁명화를 추구하지는 않는 品性論的 한계를 보여주게 된다.

(6) 評 價

이 시기는 당내 정권투쟁과 함께 경제건설이 최우선과제였으며, 전기에

이어 주민등록·노동력동원에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 진다.

노동력동원은 사회주의 경쟁운동, 천리마운동, 내각결정 84호 등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반제반봉건혁명기의 구호에 비해 오히려 여성의 평등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덜 강조되고 조국건설에의 헌신이라는 노동력의 발휘요구만이 더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원결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협의이혼이 폐지된 것은 맑스-엥겔스의 사회주의적 가정의 "애정에만 의거한" 가족구성을 포기한, 혼인과 이혼에 대한 國家의 干涉과 制約을 의미한다. 이 이후부터 북한의 가족관계에 대한 제정책은 가족구조의 모순에서 오는 성차별은 도외시한채 사상혁명에 치우치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이후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능동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없이, 여성의 의식각성과 사상혁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일종의 精神主義的 誤謬에 빠지게 된다.

5. 社會主義의 全面的 建設期(1961-1971)

(1) 社會的 背景

1961. 9. 11-18 사이에 진행된 노동당 4차대회는 中·蘇紛爭이 표면화되던 시기에 개최되어 북한의 입장은 중립을 지켜야 했고, 3차대회 이후 反宗派鬪爭이 계속 전개되어 왔으므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의 단결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당의 反宗派鬪爭의 正當性과 "어떠한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항상 승리에로 인도한 김일성의 지도의 현명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의 친선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노동당 4차대회는 이러한 정치적 의의 뿐 아니라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에의 동원을 선언한 사회경제적 의의가 큰데, 7개년 인민경제계획에서는 全面的인 技術改建과 文化革命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선언했었다.

이러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한다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64.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노동계급화, 농업을 공업화·현대화, 농촌을 문맹화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50]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1967. 5. 당중앙위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唯一思想體系 구축을 논의, 또 한번 반김일성세력 숙청이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당내 독재를 확고히 한 김일성은 1967. 5.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51] 를 통해 사회주의제도 완성 후에도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지속될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경제 각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 추진과 함께 김일성유일사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다수의 노동력 동원과 아울러 그만큼 많은 사상교육이 실시될 것을 요구하였고, 김일성에의 충성도를 중심으로 주민을 분류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성분 재분류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1964. 2. 노동당중앙위 제4기 6차전원회의에서는 "각계각층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제하의 토의에서 군중노선을 결정, 주민들을 다시금 포섭, 설득·정비한다는 명목으로 1966. 4—1967. 3까지 북한 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재등록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그루빠, 사회안전부요원등을 행정·생산단위 말단까지 직접 파견, 직계3대, 본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하였다. 이는 1958년 집중지도사업에 제출받은 자술서의 내용을 재확인, 주민의 충성도를 출신성분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주민의 출신성분을 분류한다면 가정의 환경, 가족의 영향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부모의 영

5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95—245.
5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59—276.

향으로부터 次世代를 격리하여 공산주의적 가족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에의 여성동원과 사회주의적 여성으로의 사상개조를 목표로하여 유치원지도국 신설, 가정의 혁명화 등의 정책수단을 택하게 된다.

(2) 母性保護 規定

여성에 專屬되는 정책으로 거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정책적 결정으로는 1966. 9. 27. 내각결정 23호로 내려진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3子女 女性의 1일노동시간을 6시간이내, 혹은 주5일 근무시 1일 8시간노동으로 제한한 것인데, 한때 出産奬勵政策으로 평가된 결정이다. 이는 북한이 산아제한을 실시한 이후인 1978년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도 다시 규정되어 출산장려가 아니라 母性保護政策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와 직장의 이중부담을 다소 경감시키는데 그치는 것이었다.

(3) 託兒所 增設과 幼稚園 指導局 新設

1958년부터 급격히 증가된 탁아소는 이시기 더욱 체계적으로 증가, 주탁아소, 일탁아소, 월탁아소 등으로 分化된다.

주탁아소는 먼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월—토까지 아이를 위탁했다가 주말에 집에 데려가는 것으로 각 도·시·군에 2—3개 설치되어 있다. 이는 1961년부터 설치된 것이다.

월탁아소는 아예 한달간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으로 평양·개성·청진등 주요도시에 2—3개 설치되어 있고, 1965년경부터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탁아소 및 유치원의 증설에 따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4. 7.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이 발표되고, 1966. 10. 전국 보육원·교양원 대회가 개최되어 유치원

• 탁아소의 보육원 • 교양원에 대한 사상교양 및 지도가 강화된다. 그리하여 유아원 교양원의 경우 종래 고졸이상이던 것이 1966년부터 대학에 유아원과를 신설, 대졸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1967, 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위해 내각에 유치원 지도국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로써 탁아소—유아원으로 아동의 사회적 양육체계가 확립된다.

그러나 이의 法制化는 1976년 "아동보육 교양법" 제정까지 지체된다.

그런데 이러한 탁아소 • 유치원은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는 여성을 育兒로부터 해방시켜 직장생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육원 • 교양원을 통해 兒童의 初期社會化를 統制하는 것이다. 즉, 乳幼兒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축소하고 集團主義的, 共産主義的 인간으로 양육하려는 것이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 1945—1960년까지 탁아소 유치원이 설립된다면, 이 시기이후 후자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강조된다는 것이 이 시기 유치원 지도국설립의 의의라 하겠다.

이러한 탁아소 • 유치원의 강화의 목적은 후에 "아동보육교양법"에서 명백히 규정되게 된다.

〈탁아소 • 유치원 현황〉

	탁 아 소		유 치 원	
	탁아소수	수 용 인 원	탁아소수	수 용 인 원
1960	7, 624	394, 481	4, 470	295, 485
1966	23, 251	877, 000	15, 218	790, 000
		(적령기 아동의70%)		(적령기 아동의60%)
1970	86, 000	1, 200, 000	6, 800	950, 000

출처: 이태영, 북한여성(서울: 실천문학사, 1988), p. 225.

(4) 成 果

前期에도 그러했지만 이 시기의 여성정책도 여성을 생산현장에 동원하는데 치우치고 있다. 즉 여성을 생산에 동원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려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북한 여성정책의 편린을 보여주는 것이 1961년의 전국어머니대회이다.[52] 이 대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은 악독한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계속 인내·봉사하는 태도가 온당하다, 방탕한 남편을 계속 인내로서 교화시켜야 한다, 이혼은 온당하지 않다는 식의 家父長的 秩序의 肯定을 보여준다. 이 어머니대회문헌집과 이 시기의 여성관련정책의 경향은 여성의 사회적 동원이 가사와 직장의 二重負擔만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위의 어머니대회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양성해 낼 중대한 임무"가 어머니들에게 주어져 있음이 지적되었다.[53] 이에 참가자 일동은 후대들의 양육을 더 잘하도록 방조하겠다고 선서한다.

이것은 생산현장에 투입되면서도 또한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고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傳統的 家庭主婦의 역할도 동시에 훌륭히 수행해 내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1945—1960년 사이에 보여주었던 비교적 전통적 가정주부역할의 탈피로부터 1972년 이후 가정혁명화, 육아의 사회화와 함께 가정주부의 역할강화가 다시금 강조되게 되어,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성적 분업타파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나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변질되게 만든다. 유치원·탁아소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아동교육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아동

52) 조선민주여성동맹, 전국어머니대회 문헌집(평양 : 근로단체출판사, 1962)

53) Ibid., pp. 390—394.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 되고, 이것은 1970년대에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6. 社會主義 鞏固發展期(1972－現在)

(1) 社會的 背景

1970. 11,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와 19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는 1970년으로 북한사회의 社會主義的 轉變이 完成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1972년 社會主義憲法을 공포,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이 선언된다.

1958년까지의 농업의 집단화, 개인상공업·개인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완수에 이어 1960년대의 7개년 인민경제계획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완수로 북한이 완전한 無階級 社會主義國家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계급을 볼 때 1970년대의 북한에 계급이 소멸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바, 그렇다면 계급소멸 후의 북한사회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에 김일성이 1967년, 過渡期 以後－여기서의 과도기란 노동계급의 정권획득부터 완전한 무계급 사회주의국가의 완성까지를 의미한다－에도 전세계적 범위에서 높은 물질적 생산수준, 높은 공산주의적 道德·文化·生活樣式을 이루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완성될 때까지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계속되어야 하며, 물질적 요새,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었다.

사회구조가 그리고 산업구조가 완전히 사회주의화 했다면 남는 것은 생산력 향상과 지속적 사상혁명으로 혁명을 세계에 파급시키는 것 뿐이다.

따라서 1972년 이후 북한은 3大革命運動, 3大革命小組運動, 사회주의적 生活樣式의 확립, 전주민의 革命化·勞動階級化 등 사상개조에 치중한다.

그런데 실상 1972년 이후 북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김정일의 대두이다. 김정일은 1972년 이후, 처음에는 문화예술계를 지도하면서부터 "지도자 선생님"으로 부상되고 있었다. 이어서 1973년부터 강조된 3대혁명운동 및 3

대혁명소조운동을 김정일이 총지휘하고, 소조원들을 각지에 파견, 생산과 사상교양을 지도 감독하며, 소조원들을 대거 노동당에 입당시키면서 後繼世襲이 可視化된다. 그러나 당 내외의 반발로 1970년대 후반 한때 김정일 후계 세습은 포기되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다 1980년 노동당 6차대회는 김정일 後繼世襲을 公式化한다. 이 대회에서 김정일은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당비서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가 선언된 그 순간부터 북한은 혁명지속의 명분아래 부자세습체제 확립에로 들어서며, 이것이 그들의 사회주의하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특징으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특징짓는 無階級 社會下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양대요새 점령을 목표로 하는 3대혁명의 명분아래 주민의 思想強化·父子世襲 確立을 위한 제반 정책들로 나타난다. 이들의 여성정책에서의 반영은 여성들의 革命化·勞動階級化, 여성들의 3대혁명추진, 兒童養育의 社會化, 家庭의 革命化등으로 나타난다.

즉, 1972년 이후 북한 여성정책은 무계급 사회주의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공산주의혁명의 지속이라는 사회전체적 목표에 일치하여 그를 위한 양대 요새점령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대요새 점령을 위한 여성의 활동은, 즉 政策手段은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로동법,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대혁명운동 등으로 요약된다.

(2) "녀성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 할데 대하여"[54]

북한 여성운동의 경험과 사회주의적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여성운동 문제, 특히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 여

54) 김일성저작선집 6, pp. 112—135.

성문제의 기본내용과 그 종국적 해결방도를 밝혔다[55] 는 김일성의 연설은 1971. 10. 7. 여맹 제4차대회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思想的 要塞 占領을 위한 要求의 표현이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여성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것은 인구의 절반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을 혁명화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56]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여성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생활 강화, 둘째 사회진출 조장과 이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증설, 셋째 여성간부 양성, 넷째 여성자질 향상, 다섯째 애국절약투쟁 전개, 여섯째 각계각층 군중결집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이 연설은 김일성이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밝힌 것으로, 반제반봉건혁명기에 활발했던 여성대상 언급이 한동안 관심밖에 있다가, 여성관련 사항을 모처럼 정리한데서 그간의 김일성의 인식변화를 살필 수 있어 중요성을 갖는다.

이 연설에서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가 가정의 혁명화에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어머니·아내로서의 여성의 영향력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것은 여성을 個人으로서의 勞動者·革命家로 보지 않는다는 反對解釋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첫째로 조직생활, 둘째로 사회진출이라고 규정한 것과 가정의 혁명화를 이어서 생각한다면, 여성은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해 조직생활과 직장생활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직맹이나 농근맹회의에서 가정의 혁명화에 맹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연결시킨다면, 사회주의제도 완성이후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김일성의 인식은(여성=가정, 그리고 직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

55) 사회과학출판사,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데 대하여"에 대하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

56) Ibid., p. 3.

즉 직장생활·노동계급화가 附加된 것 뿐 여성을 가사에 종속시켜온 기존 봉건적 혹은 자본주의적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여성들의 직장과 조직생활, 간부양성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하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다. 즉 사회주의하의 여성은 어머니요 아내인 지위를 가지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기대받는다.

이렇게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는 여성자체의 個體的 革命化, 人間으로서의 革命化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련하의 혁명화라는 것이 현재의 북한 여성정책의 기조가 된다.

(3) 社會主義 憲法과 家庭의 革命化

1972. 12. 27,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에서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제6조)고 선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제10조)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인민공화국헌법과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만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벌,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이러한 性的 平等의 憲法的 規定은 1948년의 인민공화국 헌법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여성의 母性保護規定을 보다 強化한 정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헌법은 가정을 "사회의 세포"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밑에 있다"고 한 인민공화국 헌법과 가정의 관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민공화국 헌법의 가정은 인간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은 사회의 세포로서, 전체를 위해서 규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협의이혼이 폐지되었고, 이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다. 이제 사회의 세포는 사회의 생존·발전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강화되어야 했다. 이것이 가정의 혁명화이다.

즉, 가정의 혁명화는 공산주의가 필승한다는 정신으로 무장,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배양, 부단한 혁명의식 고취,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정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가족의 구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가족을 사회의 세포로 규정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4) 사회주의로동법(1978. 4. 18)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에 따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시대의 노동법령과 다른 사회주의하의 노동법이 제정된다.

동법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노동이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동이며, 모든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할 것(제3조)과,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제4조 및 5조)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장 전체는

노동이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한다.

제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은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기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에게는 야간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상관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의 규정과 유사하나 동법의 적용범위가 노동자·사무원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사회협동단체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나 계획배치가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법은 勞動을 義務化하여 여성이 집안에 머무는 것을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직장에 나가지 않은 여성(부양가족)은 식량배급이 300g(통상 700g)이고 직장에 안나가도 결국 가내작업반 등에 동원되어야 하며, 그나마 미혼여성은 학생이 아닌한 집에 머무를 수 없도록 강제 배치된다.

(5)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6. 4. 26 공포된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아린이들을 사회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 것(제2조)이라고 선언하여 아동의 社會的 養育의 基本原則을 밝히고 있다.

同法은 제2장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 양육을, 제3장에서는 문화적, 과학적 어린이 보육을, 제4장에서는 혁명적 어린이 교육교양을, 제5장에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교양원을 규정하고, 이어 제6장에서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단계까지 달성된 育兒의 社會化의 成果를 토대로, 보다 사상교양, 특히 혁명정신의 배양에 힘을 쏟도록 요구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여성을 육아로부터 해방시켜 社會的으로 動員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되도록 兒童의 初期社會化를 規制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동법은 유례없이 교육에 높은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법제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동교육에 대한 투자나 탁아소·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북한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때 놀라울 정도로 큰데, 이것은 革命의 後備隊 養成이라는 아동양육의 기본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未就學 兒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사회화라면, 就學兒童을 대상으로한 교육의 사회화를 규정한 것이 1977. 9. 5의 사회

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테제는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두 요새건설에서의 사상적 요새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상적 요새점령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테제에서 열거된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는

첫째, 黨性·勞動階級性의 구현

둘째, 교육에서 主體의 確立

셋째, 敎育과 革命實踐 結合

넷째, 國家의 敎育責任 등이다. 이어서 테제는 이러한 원리를 구체화시켜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義務校育은 1956년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실시, 1958년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실시, 1967년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1972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실시 등으로 발전되어 왔던 바, 동 테제는 이러한 성과 위에 보다 思想革命을 강조한 北韓敎育의 基本原則이다.

이러한 보육교양법과 테제는 해방이후 꾸준히, 가장 알차게 확대되어 온 교육·양육의 사회화를 集大成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思想革命의 관철을 明文化한 것이라 하겠다.

(6) 女性들의 3大革命運動

1976, 여맹 30주년 기념보고회에서 향후의 여맹과업을 3대혁명과업의 수행이라고 再闡明하고, 모든 여맹조직이 3대혁명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였다.

〈여맹 30주년 기념보고회에서의 3대혁명과업〉

❶ 사상혁명 : 모든 사회성원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

① 사상교양사업의 전개

ㅣ) 수령의 주체사상 교양

ⅱ)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
백번읽기운동 전개 → 녀성자신과 가정을 혁명화
ⅲ)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집단주의 정신의 교양
②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녀맹생활의 총화를 비판의 방법으로 전개

❷ 기술혁명 : 착취·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고 자주적·창조적 생활보장을 위한 투쟁.
모든 녀성은 3대기술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 투쟁
→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녀성도 주인답게 참가
ⅰ) 대부분이 녀성인 경공업·상업류통편의봉사부문 노력자는 각분야에서 당의 방침을 관철
ⅱ) 녀성과학자·기술자·녀성근로자들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기술혁신안 제출
ⅲ) 농촌녀성—현대적 농기계조작법·농업기술지식을 소유

❸ 문화혁명 :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실시로 후대를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고, 모든 근로자가 앞으로 고중(高中)졸업정도의 지식과 1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하여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 후대들을 육성(공산주의 후비대로서)에서 녀성 및 녀맹원의 막중한 임무를 인식하여 어머니학교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정상 운영하여 모든 어머니를 공산주의적 어머니로 교양

이러한 여맹의 課業에서도 사상교양이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를 구호로 내세워, 혁명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지향하는 것을 인식의 기본적 출발로 잡고 있어서 個體的·獨立的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 여성의 3대혁명의 성격을 反證한다. 즉 여성의 革命化의 기본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主婦이며, 혁명후비대의 어머니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되자는 것임이 거

듭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7) 評 價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에는, 비록 그 打擊對象이 지주·일제·친일 자본가 등으로 前資本主義的 존재일 망정, 기존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여성의 동원이 주장되었다. 이때는 차라리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독립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對內的으로는 打倒對象이 消滅되었다고 선언된 후, 더이상 파괴할 질서가 없다고 보고서 여성에게 사회안정을 위해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자세습이라는 정치적 요구에 맞추어 전사회가 하나의 가부장적 국가로 재편되면서, 여성의 역할도 가정에서의 역할이 일차적인 것으로 되어 버린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혁명성은 인간으로서의 혁명성이 아니라 남편과 아동을 위한 혁명성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반제반봉건 혁명기에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자유·평등의 인간상이나, 맑스-레닌이 규정한 평등구조속의 여성상과 乖離되는 것이다.

따라서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서, 여성은 새로운 家父長制 秩序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革命 後備隊를 키워내는 어머니의 역할과 가정을 혁명적으로 지켜내는 傳統的 女性像에다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가 부가된, 二重的 역할의 수행이다.

여성들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 진출하였고 상당한 비율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각급 당·정·기관의 간부로 등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외면적 평등과 달리, 여성의 기본적 역할이 어머니라는 것은 애초에 육아를 사회화하려던 맑스-엥겔스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이러한 革命的 어머니, 革命的 主婦가 되기 위한 혁명화는 인간으로서의 여성해방에 커다란 限界를 보여주고 있다.

V. 評價와 展望

1. 意圖된 社會秩序

맑스-엥겔스는 사유재산의 철폐를 통해 無階級·無搾取·無抑壓의 평등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해방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는 社會主義·共産主義 秩序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현실사회는 경제적 계급간의 대립뿐 아니라 성·인종·민족의 제요소로 분리·대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旣存社會=階級社會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성차별의 철폐도 요구하게 된다.

맑스-엥겔스는 성차별의 근원은 생명재생산과 생활수단의 생산에서의 성적 분업이 역사의 일정단계에서 생활수단생산의 압도적 우위에 따라 성적 차별로 변화한 것에 있다고 보고, 역사적 계기를 私有財産制度와 相續制度에서 찾는다.

이렇게 사유재산제도와 상속제도로 인해 성차별을 받는 여성이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격리된 공간에서부터 벗어나 사회적 생산에 참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育兒가 社會化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맑스-엥겔스의 이상적 사회질서는 사유재산철폐 위에 사회적 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양육으로 전면적 평등구조속의 인간해방이 달성된 사회로, 이 사회는 공산주의적 인간양성으로 승계·지속·발전하며, 또 공산주의적 인간은 인간해방으로 완성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맑스-엥겔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한 맑스-레닌의 인식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북한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전세계적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로서, 현단계는 그를 향한 프롤레타리아독재단계라고 규정하였다.

〈공산주의적 사회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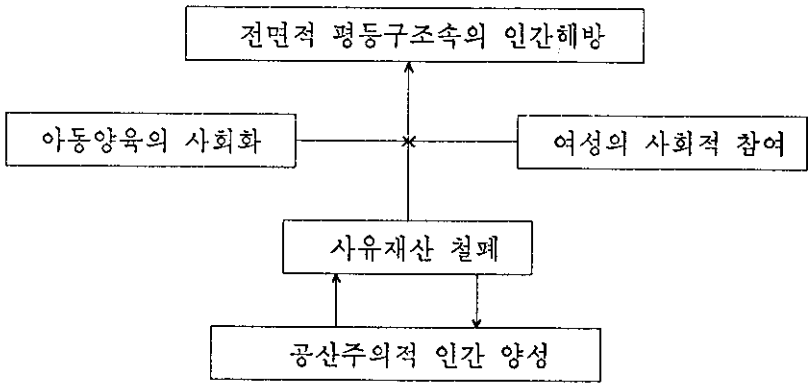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성원이 전면적으로 발전,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서 物質的·精神的·思想的으로 진실로 自由롭고 創造的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사회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과제가 제기되며, 그 과제해결의 수단이며 과정이 프롤레타리아독재단계이다. 이때 고도의 공산주의사회는 여성도 남성과 모든면에서 평등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체구도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어떠한가.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착취와 억압도 없는 全面的 平等構造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서 대접받을 것을 요구한다. 즉 전면적 평등구조속에서, 여성도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差別的 抑壓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남성의 확실한 자손을 생산하는 종속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주적 개인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社會에 參與, 동등한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성은 생명재생산과 육아의 생물적 부담을 안고 있어 생산에의 참여가 제약된다.

그러므로 여성을 평등구조속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育兒의 社會化와 母性保護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질서는 맑스ㅡ엥겔스의 이상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①남녀평등의 법적보장, ②계획된 경제에 여성들을 대거 인입, ③육아·교육의 사회화, ④사상혁명 등을 도모하였다.

男女平等의 法的保障은 남녀평등권 법령을 출발로 人民民主主義共和國憲法, 社會主義憲法 등에서 거듭 제반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여성을 계획경제에 인입시키는 것은 초기에는 여성참여 호소와 탁아소 설치등으로, 전쟁후에는 각 기업소·학교 등에 대한 강제적 규칙과 탁아소 증설로, 사회주의 제도 완성후에는 전면적 인력계획배치(무리배치)로서 달성시켰다. 이때 남녀평등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모성보호를 위해 작업중 授乳時間의 보장과 産前産後休暇,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작업금지, 자녀있는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등이 추진되었다.

育兒와 教育의 社會化는 여성해방 뿐 아니라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강조되어 幼稚園·託兒所 완비, 전반적 11년제 무상교육제 등이 실시되었다.

2. 北韓 女性의 現實

맑스ㅡ엥겔스에 의해 정식화된 공산사회의 질서는 사유재산의 철폐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 아동의 사회적 양육으로 평등구조속의 여성해방을 달성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終局的 秩序 實現을 위해 우선적으로 타파해야 했던 것이 植民地·半封建社會였다. 식민지·반봉건 사회는 재산에 따른 경제적 착취·종속 뿐 아니라 식민지적 착취와 봉건적 신분적 종속의 낡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사유재산 철폐로 달성가능한 평등구조를 상정하기 이전에 일단 신분적 혹은 사상적 종속을 타파해야 했으며, 이것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다. 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북한 혁명의 시초이며 가장 급격한 변혁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궁극적 질서로 맑스-엥겔스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질서를 상정하면서도, 인식의 출발을 식민지·반봉건사회에 두고 있었다.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맑스-엥겔스가 의도한 개인으로서의 여성해방을 위한 동원이 아니라, 일제·지주와의 싸움에서 요구된 인력동원으로서의 동원이 각 時期別로 展開되었다.

이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명백한 打倒對象인 日帝와 地主·기타 資本家와의 투쟁에 일차적 중요성이 주어진 나머지, 종종 현실과의 관계에서 궁극적 질서에의 인식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어 식민지·반봉건적 敵, 구체적으로는 일제와 지주·양반이 타도되고 난 후에는 窮極的 秩序의 抽象的 형태를 參照하기를 멈춘다.

그리하여, 좁게는 노동자의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보다 넓게는 사회주의제도 확립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현실적 敵 — 일제·지주·량반·자본가 — 과 투쟁하는데 주력하였고, 현실의 적이 대내적으로 타도되었다고 선언된 순간부터 궁극적 질서의 명분아래 현실의 긍정·유지·강화에 치우치게 된다.

북한에서 사회적 생산에서의 여성참여는 유례없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현실투쟁을 위해 동원된 만큼 現實的 敵이 타도된 후에는 여성동원의 궁극적 이유가 이미 망각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정으로의 격리를 타파, 여성을 해방하려 한 맑스-엥겔스와 달리, 여성을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중요한 보호자로 보는, 다시말해 (가사=여성)이라는 傳統的 性的分業의 관념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

러면서도 사회적 동원의 현실적 필요는 계속 강조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여성은 가정의 혁명화라는 남성과 다른 또다른 負擔을 진다. 즉 북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생산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유지하고 아동을 혁명적으로 양육하는 전통적 여성의 "家庭主婦" 역할도 종전과 다름없이, 어쩌면 革命性이 追加的으로 요구되어 더 열성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북한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각 분야의 제도적 평등보장과 탁아소·유치원망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노동의 의무화로 인해 사회적 진출은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家父長制 秩序도 지켜야 한다. 여전히 여성은 家事를 부담해야 한다. 설령 가사노동의 노동경감조치, 예컨대 밥공장이나 반찬공장의 이용확대와 탁아소 이용, 가사용품의 기계화 등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해도 가사자체는 여성의 고유한 일임은 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안팎으로 노동을 요구받는다.

더구나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대두이후 북한은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부자세습을 재산상속제도로부터 여성억압이 강화되었다는 맑스-엥겔스의 논리에 비추어 볼때, 지위의 상속이라는 다른 의미의 상속의 사회적 정당화가 여성지위를 남성종속적인 육아와 가사 담당자로 환원시키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된다.

북한여성의 귀감인 김정숙은 김일성의 "親偉戰士"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이다. 여성들도 따라서 아내이며 어머니로서 우선 규정된다.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는 것보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가정을 혁명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의 基本要求이다.

따라서 북한은 맑스-엥겔스의 평등한 사회구조, 자유롭게 해방된 여성이 아니라, 전체속의 세포인 가정, 가정의 주부이며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경향은 김일성-김정일 세습과 발맞추어 더욱 강화된다.

결국 북한의 여성은 사회적 생산에 동동하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등

한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지는 못하고, 새로운 家父長制 秩序에 종속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침체로 女性 勞動力의 需要조차 줄어들자, 최근에는 부양가족이라하여 취업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는 여성도 증가, 경제적 종속도 강화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여성은 家事와 社會的 生産의 二重負擔을 지면서 동등한, 독립적 인격으로 해방되지는 못하고 있다.

3. 展 望

북한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부장제 질서가 강화된 것은 두가지의 요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는 사회의 세포로 가정을 규정하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함에 따라 (家事=女性)이라는 傳統的 女性觀이 온존 혹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婚姻의 解消는 規制되어야 한다. 혼인해소의 不能은 어느 일방의 意思가 抑壓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억압되어온 여성이 역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 의사를 억압시켜야 하는 바,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文化的 要因)

둘째는 김일성 부자의 세습에 따라 남편,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家族秩序가 正當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은 家父長的 위계질서에 복종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政治的 要因)

그런데 북한의 여성정책은 당국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므로 정치적 요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해 왔다.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은 相互 上昇作用을 하여, 전통적 여성관이 여성의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고, 이러한 여성관이 사회전체의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支持하며, 사회전체의 가부장적 질서가 다시 여성의 순종과 인내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두요인중 어느 하나가 우선 파괴되지 않는다면, 외면적 여성의 평등 지위에도 불구하고 성적 역할 분담, 성적 차별의 관점은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정일 대두 이후 여맹의 역할도 위축되고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가정에 잔류하는 여성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그간 애써 획득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도 침식되고 있다.

이상으로 보면 경제적 독립의 획득이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가져오리라던 맑스ㅡ엥겔스의 이론은 북한에서 부정되게 된다. 경제적 참여와 그를 위한 육아의 사회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동원의 실패로 여성의 평등획득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동원은 성공적이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제반분야로부터 확인된다.

그러나 여성의 해방은 획득되지 못하고 새로운 가부장제 질서에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經濟的 獨立과 私有財産 撤廢라는 經濟的 要因이 여성해방을 가져오리라던 맑스ㅡ엥겔스의 經濟決定論은 현실로서 檢證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일성이 맑스ㅡ엥겔스의 기본적 사회질서를 충실히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현실이 맑시즘의 構造전체를 부정한다고 斷定하기엔 다소의 문제가 있다.

이제 본고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정리해보면, 북한의 여성정책은 각 시기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반제반봉건 혁명기의 제정책이 봉건적 질서파괴에 큰 역할을 했으며 탁아소설치등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아동의 사회적 양육과 계획적 인력배치는 여성을 사회의 반을 점하는 勞動者들로 再編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성해방은 달성되지 못했다. 사회적 동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해방되지 못했으며, 이유는 북한의 고유한 특성ㅡ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ㅡ에 歸責될 것이다. 여성의 役割에 대한 觀念의 변화를 억압하는 정치적 家父長國家化가 여성해방을 가장 크게 방해한다.

북한의 여성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후의 정책변화를 살펴본 후에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단계로서는, 부자세습체계가 포기되지 않는 한 가부장제 질서를 파괴할 수 없으며, 가부장제 질서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평등과 해방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얻어진 결론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書　籍〉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 박영사, 1981.

고려대학교 가족법교실 편역, 소비에트 가족법, 서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관계자료집(1－4), 서울 : 공산권문제연구소, 1973.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1－4),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_____,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1－4),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_____, 북괴법령집(1－5), 서울 : 국토통일원, 1972.

_____, 북한년표(1945－1961),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_____, 북한년표(1962－1979),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_____, 북한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토통일원, 1973.

_____,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변화실태, 서울 : 국토통일원, 1983.

_____, 북한의 생활실태, 서울 : 국토통일원, 1971.

_____, 북한의 가족법과 전통적 가족제도, 서울 : 국토통일원, 1975.

_____, 북한의 인권, 서울 : 국토통일원, 1989.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0.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 박영사, 1976.

김대웅 역(Engels, F.),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 서울 : 아침, 1985.

김미경·이연주 역(Croll, E.), 중국여성 해방운동, 서울 : 사계절, 1985.

김봉율 역(Meillassoux, C.), 자본주의와 가족제 공동체 : 여성·곡창·자본, 서울 : 까치, 1988.

김운영 편역, 사회주의 이해형태론, 서울 : 아침 새책, 1988.
김 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7),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3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김일성저작선집 1—9,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김준엽 • 김창순 • 이일선 공편, 북한연구자료집 1—9, 서울 :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69—1983.
김창순,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총서 3, 서울 : 북한연구소, 1977.
김태경 역(Marx, K.), 경제학 철학 수고, 서울 : 이론과 실천, 1985.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서울 : 박영사, 1986.
감한민 역(고승효),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 : 그 이론과 실제, 서울 : 청사, 1988.
김홍명 역(Gouldner, A.), 맑시즘;비판과 과학, 서울 : 한벗, 1984.
김희은 역(水田珠枝), 여성해방사상의 흐름, 서울 : 백산서당, 1983.
민주주의 민족전선, 조선해방년보, 서울 : 문우인서관, 1946.
박영신 • 한상진 역(Gouldner, A.), 비판사회학, 서울 : 현상과 인식, 1983.
박완신, 북한행정론;관료체제와 행정행태, 서울 : 회성출판사, 198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사회과학출판사 편,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데 대하여"에 대하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_____,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데 대한 우리당의 정책,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_____,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6,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서동익, 북에서 사는 모습, 서울 : 북한연구소, 1987.
송두율, 소련과 중국, 서울 : 한길사, 1990.

신용하 • 박명규 역(Coser, L.), 사회사상사, 서울 : 일지사, 1978.
신인령 역(Struhl, P. R., Jagger, A. M.),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서울 : 도서출판 풀빛, 1983.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87.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89.
엄명숙 • 강석란 편역,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 서울 : 중원문화, 1990.
유석렬, 북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88.
원석조 • 강남기 공역(George, V., Wilding, P.),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서울 : 홍익재, 1987.
이상우 외 6인 공저, 북한40년, 서울 : 을유문화사, 1988.
이태영, 북한여성, 실천신서20, 서울 : 실천문학사, 1988.
이효재 편역,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비신서24,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0.
인경석 역(Room, G.), 복지사회학, 서울 : 한국 복지정책연구소, 1985.
정승현 역(Marx, K.), 청년 맑스의 철학, 서울 : 아침 새책, 1987.
정정길, 정책결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88.
_____,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89.
조선민주녀성동맹, 전국 어머니대회 문헌집, 평양 : 근로단체출판사, 196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 략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령도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조일호, 조선가족법,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58.
차낙훈 • 정경모 공편, 북한 법령연혁집 제1권, 서울 :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69.

최달곤, 북한혼인법, 서울 :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79.
최 명 외, 북한개론, 북한의 인식1, 서울 : 을유문화사, 1989.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6.
한석봉 • 심형일,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3,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현대평론 역(Rain, D.), 레닌이즘;사회학적 해석, 서울 : 청사, 1985.

〈辭典 및 年鑑〉

조선중앙년감, 1945—1989,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백과전서 1권—6권,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3.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統一家族論文集 第3輯

民族統一의 摸索

□ 인 쇄 : 1990년 12월 27일

□ 발 행 : 1990년 12월 28일

□ 발행처 : 통 일 원

□ 인쇄처 : 서라벌인쇄주식회사